

연 구 논 문

도산 안창호의
서대문형무소 투옥과 수감 생활*

이 명 화**

- | | |
|-----------------|-----------------|
| 1. 머리말 | 4. 대전형무소 이송 |
| 2. 도산의 국내 압송 | 5. 2차 서대문형무소 수감 |
| 3. 1차 서대문형무소 수감 | 6. 맺음말 |

1. 머리말

도산 안창호는 일생을 통해 4차례 감옥에 투옥되었다. 첫 번째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伊藤博文을 처단한 안중근 의거가 일어나자 ‘살해가담 혐의’를 받고 평양에서 긴급 체포된 적이 있다. 용산 헌병대로 압송되어 취조를 받은 도산은 영등포 감옥에 투옥되었다. 두 번째는 1927년 만주 길림을 방문했을 때이다. 길림성 대동문 밖에 위치한 최명식의 집인 대동공사 앞에서 4~500여 명의 교민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나석

* 이 논문은 2010년 4월 4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재개관 기념으로 「경술국치 100년, 항일민족지도자와 서대문형무소」라는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주 의사 추도식 겸 강연회에서 도산은 ‘대한청년의 진로’에 대해 강연 하던 중 무장한 중국경찰에 연행되어 길림 경찰청 구치소에 구금된 적이 있다. 세 번째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거가 일어난 날, 이윤희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곳에서 프랑스 경관과 일제 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었다. 상해 일본군 헌병대로 끌려가 취조를 받은 후 국내로 압송되었다. 경기도 경찰부의 취조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도산은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訊問과 審問을 받았으며 4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이후 도산은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어 형을 마치고 출옥하였다. 도산은 평양 大寶山에 은둔해 있으면서 지친 심신의 건강을 추슬렀지만 1937년 6월, 중일전쟁을 앞두고 ‘동우회사건’을 일으킨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옥중에서 병이 깊어지자 일제는 서둘러 병보석으로 출감시키고 경성제국대학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도산은 최후를 맞이하였다.

본 논문은 도산의 형무소 투옥생활을 통해 당시 형무소 刑行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동우회사건’으로 재투옥되어 서거하기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도산 안창호의 말년 행적을 추적함으로써 그의 애국적 삶을 아울러 조명하고자 한다.

2. 도산의 국내 압송

1932년 4월 29일 오전 10시 10분, 상해 虹口公園에서 개최된 天長節 축하식장에서 상해파견일본군총사령관 白川義則 대장, 제9사단장 植田謙吉 중장, 일본해군 제3함대 사령관 野村吉三郎, 주중일본공사 重光葵 등이 死傷당한 윤봉길의거가 일어났다. 현장에서 체포된 윤봉길의사는 상해 일본군 헌병제1분대¹⁾로 넘겨져 취조를 받고 헌병대구금소로 이감되

¹⁾ 도산은 상해 楊樹浦 일본 헌병사령부(현재 四川北路 許昌路 227弄)로 송치되어 취조 받았다.

었다. 이곳에 끌려가 갇은 고문을 당하고 신문받은 윤봉길의사는 “李春山이라는 한국인에게 폭탄 2개와 200위안을 받고 폭탄 투척을 명령 받았다”는 자백을 하였다. 春山은 李裕弼의 호이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일제 영사관 경찰은 프랑스 조계공무당국의 협조를 받아 의거 날 당일인 오후 2시에 李裕弼 집을 급습하였다. 그러나 이유필이 집에 없자 경찰들은 집주위에 잠복해 있다가 마침 이유필을 방문한 도산을 체포하였다. 그 때가 오후 4시경이었다.²⁾ 상해 소년단체인 소년동맹의 간부를 맡았던 이유필의 아들 이만영에게 도산은 소년동맹이 주최하는 축하행사 비용 2원을 지원하기로 약속³⁾했으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유필의 집을 방문한 것이다. 도산은 자신은 중국 國籍者로 일본인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프랑스조계 공무국 경찰은 도산을 일본 영사관에 넘기었다. 일제는 이유필을 대신하여 체포한 이가 안창호라는 거물임을 알고 놓아줄 리 없었다. 한편 의거 다음날인 30일 아침부터 상해일본총영사관 경찰관 44명과 사복 헌병 22명, 그리고 프랑스조계 공무국 경찰 12명 등 경찰은 합동 검거에 나섰다. 의거 관련자들로 지목된 독립운동가의 집을 습격하여 20여 명을 체포했으나 그 무렵 주요 인물들 대부분은 이미 상해를 탈출해 나가고 없었다. 프랑스조계 공무당국은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여 법적 수속도 이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일본 영사관 경찰에 도산의 신병을 인도하였다. 프랑스 조계 당국의 이 같은 행위는 분명히 국제법 위반이며 행정 관례를 파괴하고 중국의 주권을 무시한 처사였다. 도산이 일본 영사관에 감금되었을 때, 도산을 석방시키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여러 방면에서 경주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하였다.

2) 「안창호 피체소식을 전하는 중국 신문 기사 타이핑 원고」, 독립기념관 소장, 『도산 안창호자료』.

3) 상해에는 두 개의 소년단체인 서북인사들의 자제에 의해 결성된 소년척후대와 또 다른 단체로 주로 기호인사들의 자제들로 구성된 화랑사가 있다. 도산은 이들 소년단체의 토론회와 운동경기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게 하고 이를 후원 지도하였으며 이 두 단체의 통합을 일찍부터 권유하여 마침내 소년동맹으로 통합을 이르게 하였다.

당시 도산 안창호의 거주지는 프랑스 조계 霞飛路(1014호내 26)에 위치해 있으며 이유필의 집(霞飛路 寶康里 54)까지는 약 2리가량 떨어져 있었다. 윤봉길의거가 일어난 직후 백범 김구는 도산에게 전령을 보내 집에서 나오지 말 것을 전언하였다. 그러나 도산은 그 전에 이미 집을 나섰으며 먼저 조상섭의 집(麥賡爾常羅路 寶康里 24)을 방문해 조상섭 손자의 돌잔치를 축하한 후 뒷문으로 나와 뒷길을 이용해 이유필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 바람에 큰길에서 도산을 기다렸던 전령을 만나지 못하였다.⁴⁾ 『白凡逸志』 기록대로라면 도산은 조상섭 집에서 “오늘 큰 사건이 일어날 듯하니 오전 10시경부터 집에 있지 말라는 전갈⁵⁾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것이다.”⁶⁾

일본 영사관 경찰은 도산 안창호와 金德根과 張鉉瑾 등 3인을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자로 기소하고 1932년 6월 2일 아침 오전 11시 발의 慶安丸⁷⁾에 실려 한국으로 압송하였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선박계에는 도산의 이름을 茂木善治(54세)라고 일본식 이름의 가명을 올렸다. 도산을 수송한 선박은 4일 오전 8시에 靑島에 도착했으나 비가 내려 5일 오후 5시에 인천항을 향해 출항, 7일 오전 7시 15분에 인천항에 모습을 드러내

4) 「배준철이 도산아카데미연구원사무국 앞으로 보낸 편지, 安昌浩被逮狀況(1996.8.26)」,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찬, 『島山安昌浩全集』 13권, 2000.

5) 김구, 『白凡逸志』, 나남출판사, 2002, 257쪽.

6) 윤봉길의거 당일, 도산은 의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만연히 배회하다가 체포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는 상해 독립운동계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나 도산과 홍사단계 인물들만 모르고 있었다는 식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김구와 한인애국에서는 윤봉길의거를 기획, 시행할 때 관련 인물 외에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기에 도산만이 아니라 당시 상해의 애국지사들은 의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7) 경안호 선장 村尾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상해를 떠날 때까지도 어떠한 인물을 호송하는지 몰랐다. 다만 對岸 浦東 잔교에 경안환은 대었으며 청사관 碼頭로부터 그는 수갑 채운 채로 경관 8명의 호위 아래 경비선으로 호송되었다. 해상에 만일을 염려하였으나 더 볼 수 없는 평온한 날씨에 4일 오전 8시 靑島에 기항하여 다음 5일 오후 5시 그곳을 떠나 무사히 물에 닿게 되니 무거운 책임을 벗은 듯이 기쁘다. 다만 청도서 비를 만났으며 그는 기항할 때만 수갑을 채웠으므로 펍 자유로웠다.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말문을 닫는다(『東亞日報』 1932.6.8, 「對岸浦東棧橋에서 手錠 채운채 乘船, 慶安丸 村尾(촌미) 船長談」).

었다. 도산 일행은 상해 일본 총영사관 경관 後藤孫太郎, 田中滿壽二, 山田角兵衛, 長田伊勢藏 등 4명의 호송을 받으며 경기도청 사찰부 사찰계미와 카즈지로(三輪和二郎) 警部, 인천 고등계 형사인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정부는 수상 경찰서 경비선을 타고 선박에 접근하여 하선하는 도산 일행 3명과 총영사관 경관 4명을 태우고 인천 東棧橋에 상륙하였다. 수상서 잔교 아래에서는 경기도 경찰부 경 700호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도산은 회색 중절모를 쓰고 검은 세비로를 입고 선박에서 내렸다. 1910년 4월 한국을 탈출해 중국과 러시아, 만주, 그리고 미국 등지로 23년간을 異域風霜을 겪은 후 고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54세였다. 무언의 묵례만 하고 경관의 인도를 받아 경기도 경찰부 소속의 700호 차에 올라탄 도산은 京仁街道를 타고 서울에 도착, 공평동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구치되었다. 인천 부두에서는 도산을 맞이하기 위해 날이 채 밝기 전인 오전 5시 반경부터 도산의 친형 안치호와 누이동생 안신호, 조카딸 안맥결, 從弟인 안봉호 등 친인척과 조만식, 김동원, 허헌, 이덕환, 김성업, 김병연 등 친우 30여 명이 마중 나와 있었으나 이들은 도산과 헤어지지 못하였다.⁸⁾

경성 지방법원에서 취조를 마친 도산 일행은 동일 오후 5시 반, 서대문 경찰서 요시노(吉野藤藏) 고등계 주임 이하 수명의 경관 호위를 받으며 수갑을 채운 채로 경기도 경찰부로 호송되었다. 이튿날인 8일 이른 아침부터 경기도청 경찰부 사찰계 三輪和二郎 정부의 취조를 받고 경성 지방법원 검사의 拘引 영장이 발급되자, 3인은 1932년 6월 7일 오전 9시에 경성 지방법원 拘留監⁹⁾에 구금되었다. 동일 12시 40분에 경성지방 법원 검사국의 佐佐木義文 검사의 심문을 받을 때, 도산 일행은 현행범이 아닌 검사의 구인장에 의한 압송 형태였기에 刑事訴訟法 제89조¹⁰⁾에 의해 일

8) 『東亞日報』, 1932년 6월 8일, 「海外風霜 二十三年 縲紲로 故土를 安昌浩」.

9)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구금하여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을 받은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이다.

단 석방 조치하였다. 이는 단지 수속상의 형식 조치였기에 도산 일행은 미리부터 경성 지방법원 구류감으로 출장나와 도산 일행의 신변을 경계 하던 경기도 경찰부로 넘겨져 다시금 구속 조치되었다. 이어 바로 경기도 경찰부로 호송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며 인신은 경기도 지방법원 유치장에 유치되었다.¹¹⁾

도산이 수감된 경기도 경찰부 유치장에는 10여개의 감방이 있었다. 그 감방에 유치되어 있던 이들은 다른 곳으로 移監 조치 되었다. 일제는 도산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다른 수감자에게 미치어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기 때문에 예방조치를 취한 것이다. 도산을 취조하던 사상계 警部인 三輪和二郎는 도산의 인격에 감복하여 자기의 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죄’가 가볍도록 조서를 작성해 검사국에 송치했다고 한다. 도산도 “만일 三輪이가 事實 그대로 調書를 作成하였다더라면 나는 極刑을免치 못하였을 것인데 나를 살려 준 것은 三輪”¹²⁾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미와카즈 지로의 개인적 호의였는지 아니면 일제의 정책적 고려였는지는 알 수 없다. 40여일간 도산을 신문한 三輪은 ‘치안유지법 위반, 제령위반, 출판법 위반’¹³⁾ 등의 법령을 적용해 조서를 꾸몄다. 취조가 끝난 후, 도산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검사국으로 송치되기 전날 밤에 三輪 경부는 도산에게 남산

10) 형사소송법 第 89條: 拘引한 被告人을 裁判所에 引致한 時로부터 四十八 時間 内に 此를 訊問할 것이다. 그 時間 内に 拘留狀을 發치 않는 時는 被告人을 釋放할 것이다.

11) 경기도 경찰부 佐伯 顯 고등과장은 말하되 “될 수 있는대로 속히 취조를 끝낼 작정이나 취조할 사람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건이 단순치 아니함으로 지금 어느 때에 취조를 마치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소이다. 죄명에 관하여는 취조가 끝나지 않고는 판정하기 어려우나 치안유지법 위반, 제령 위반, 출판법 위반 기타 수 삼종 등 어떠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할까 싶소이다. 그리고 공산당원하면 단순하지마는 민족운동인 만치 외지에서 한 제반 사실을 다 자세히는 알 수 없음으로 어쨌든 취조 후가 아니고는 이것저것을 단정키는 어렵소이다” 하였다(『東亞日報』, 1932년 6월 9일, 「檢事局에선 釋放形式, 警務部再次拘禁」).

12) 朴寧峻, 「獄中の 島山」, 『공함』, 1961.4.

13) 「世界動向」, 『別乾坤』 53, 1932.7.

길을 드라이브하고 서울의 밤 경치를 구경시키는 호의를 베풀었다.¹⁴⁾ 그리고 차를 몰아 종로구 견지동 윤치호의 집에 들렀다. 도산은 윤치호와 만나 차를 마시며 회포를 푼 후 유치장으로 다시 돌아갔다.¹⁵⁾ 三輪은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어 복역했을 때도 매월 한 번씩 도산을 면회하며 위로했다고 한다.¹⁶⁾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이 진행되었을 때 예심판사였던 五井節藏도 도산을 심문하면서 “朝鮮의 偉人이요 英雄”이라는 찬사를 했다.¹⁷⁾ 경기도 경찰부에서 취조를 받았을 때, 일제가 도산을 박대하지 않았으나 고질인 咳嗽병이 악화되었고 뱃가 약해져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는 소화불량으로 신음하였다.

3. 1차 서대문형무소 수감

1932년 7월 15일에 도산은 경기도 경찰부로부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국되었으며 身柄은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었다. 도산과 張鉉瑾·金德根 일행의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경성지방법원 佐佐木 사상검사가 19일부터 서대문형무소로 출장 와서 직접 취조를 시작하였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사전 조사를 받았던 도산은 7월 25일자로 구류 기간 만기가 되었다. 그러자 일제는 바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경성지방법원 예심에 회부하였다. 상해에서 함께 송환되어 온 장현근·김덕근 두 사람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7월 25일 오후 6시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¹⁸⁾

서대문형무소 내의 교수대가 설치된 북쪽에는 새로 지은 新監 4동 안

14) 주요한, 『안도산전서』(상) 전기편, 430쪽.

15) 朴寧峻, 같은 글.

16) 大田刑務所長이었던 宮崎는 三輪和二郎 警部가 政治犯人 安昌浩를 毎月 面會하고 慰勞하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의 思想이 의심된다고 하였다(朴寧峻, 같은 글).

17) 위와 같음.

18) 『東亞日報』, 1932년 7월 26일, 「治安法違反으로 安昌浩豫審廻付」.

에 72개 감방이 있었다. 이 곳은 개전의 빛이 전혀 없다고 판정된 중대 정치범들만 수감하는 특수 감방이었다. 도산은 7호실에 입감해 있었다. 바로 옆 6호실에는 김정연이, 5호실에는 여운형, 그리고 8호실에는 吳東振이 수감되어 있었다. 그리고 상하좌우로 김준연, 최양옥, 신덕영, 이선구, 김약수, 권오설 씨 등 애국지사들이 좁은 독방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당시 서대문형무소 독방 형상에 대해서는 6호실에 수감되었던 김정연¹⁹⁾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독방은 대개가 다다미 한두장 깔릴 만한, 채광이 잘 안 되는 비좁은 방이었는데 그 속엔 조그만 뚱통이 하나 놓였을 뿐이다. 겨울엔 얼음창고 같은 감방 안에서 손발이 전부 凍傷을 입어 칼로 썬은 살을 베어 내어 야 했고, 여름엔 한증막 같은 속에서 땀을 줄줄 쏟으며 피부병으로 고생을 해야 했다.²⁰⁾

도산이 투옥된 감방 바로 옆호실에는 독립운동 단체인 共鳴團 부단장인 김정연이 투옥되어 있었다. 그는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京春街道에서 총독부 우편차를 습격했다가 붙잡혀 징역 9년을 언도받고 복역 중이었다. 죄수번호는 2081호였던 그의 회고에 의하면, 서대문형무소는 독방과 독방 사이에 두께가 2척이 넘는 시멘트 감방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수감자들은 감방 벽을 딱딱 두드리는 소위 打壁通報法을 극비밀로 사용하며 서로간에 소통하고 있었다. 3·1절이나 8.29 國恥日에는 작업하지말자든가, 내일은 ‘안중근 의거 날’이니 작업을 일체 중지하자라든가 하는 연락을 서로간에 전파식으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동맹파업을 유도하는 등 옥중에서의 저항 투쟁을 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지사들은 타벽통보법에 능숙해 암호연락이 잘 되었지만, 해외에서 검거되어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은 그 암호법 사용을 몰라서 중간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19) 金正蓮, 「刑務所の 島山先生」, 『새벽』 1957.4.

20) 위와 같음.

따라서 연락 두절이 되는 일이 없으려면 타벽통보법을 모르는 옆방 동지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 중대한 소식을 전달해야 할 때 중간에서 두절되고 말면 타벽통보법을 모르는 이에게 빨리 암호를 가르치라는 독촉이 사방에서 빗발쳤다고 한다. 순찰 간수들의 눈초리를 피해야 하면서 두 주일 동안에 여운형에게 타벽통보법을 가르쳐주는 데 성공했던 적이 있는 김정연은 옆방에 투옥된 도산에게 암호법을 가르쳐야 했다. 그러나 도산이 있는 7호 감방만은 전후좌우에서 감시가 심해 도무지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감시가 유난히 심한 특수 감방에 투옥된 이에게 암호를 가르치는 일은 공포스러운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김정연은 한 달에 두 번 작업을 쉬는 어느 일요일, 도산에게도 암호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도 조금 마음이 좋은 편이라고 평이 있는 간수가 교대해 들어온 틈을 타서 감방 안에 있는 변기통의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들어 났다 집어 넣다 하게 되어 있는 똥통을 꺼내어 도산선생이 계시는 7호 감방벽 쪽에 바싹 대어 놓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똥통을 올려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서니 6호실과 7호실 사이 가장 높은 곳에 5축 전 등알을 끼워 놓고 유리로 꼭 밀폐한 곳에 내 손이 닿았다. 내가 손가락으로 유리를 톡톡 두드리니까 도산 선생은 방안에 일어서서 발뒷축을 고이시고 응응 무엇무엇 하신다. 순간 나는 숨가쁘게 울렁거리는 가슴을 억제하면서 타벽통보법을 가르쳐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나는 가슴 속을 고동이 딱 멎는 것을 느꼈다. 온 몸이 후들후들 떨려서 얼굴에 뛰어내리다가 똥통을 걷어차서 뒤집어 엎고 말았다....²¹⁾

소란이 일자, 밖에서 순찰 중이었던 간수가 달려와서 監視口를 들여다보자, 김정연은 순간 재치를 발휘하였다. 두 손으로 똥을 퍼서 확 뿌려대며 미친 척을 해대며 추태를 부린 것이다. 당시 일제 刑行은 타벽통보법을 가르친 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배운 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었

21) 위와 같음.

기 때문에 김정연은 도산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웠다. 마구 고향을 치고 몸무림을 쳐대며 온통 주의를 자기에게로 끌어들여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다.²²⁾ 그의 발에는 쇠팡방울이 달렸고 뒤로 팔을 묶어 수갑을 채우는 악형 속에서 3주일을 비참히 지내야 했다. 도산은 그의 고통을 보다 못해 눈물을 흘리며 “김군, 참으로 미안하다. 너 죽지 말고 살아서 우리 민족의 숙원인 독립을 달성하자.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한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한국인 간수인 車億富가 올 때마다 뒷수갑과 발에 채운 쇠팡방울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하였다.

김정연은 3주일이 지난 후 제정신이 들었다고 인정받고 악형에서 놓여날 수 있었다. 만약 타벽통보법을 배워 소통하려 한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옥중 위법 행위로 취급되어 도산도 “용서 없이 戒護係로 끌려가서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눈알이 빠지도록 매를 맞고, 두 손을 뒤로 묶어 수갑을 채우고, 발에는 무게가 다섯 관이나 되는 소위 철제 땅방울을 달고 3분지 1의 減食별을 받는 동시에, 2~3년의 加刑까지 받게 될 것”²³⁾이었다고 한다.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도산은 허리 신경통이 심해져 앓기가 불편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였다. 추운 날이면 그 증상이 한층 심해져 큰 고통을 받았다.²⁴⁾ 당시 형무소를 방문하는 변호사들이 도산을 밖의 세상과 연결시켜 주는 유일한 끈이었는데, 면회를 다녀 온 변호사 김병로는 도산이 신경통과 소화 불량으로 인해 고생하며 신체가 매우 쇠

22) “간수장은 간수들과 전중이(紅衣를 입은 既決囚의 別稱)들에게 포승을 둘러서 데리고 왔다. 지랄발광하는 나를 마치 도살장에 끌고 가는 돼지모양으로 결박을 하고 戒護係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정말 미쳤나 안미쳤나 엄중하게 심사를 하는데, 취조관이나 의사를 막론하고 막 침을 뱉고 물어뜯고 고향을 치는 나는, 마치 미친개 치듯 뼈가 으스러지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놈들의 ‘아 미친다나, 미친다나’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산 선생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金正蓮, 『刑務所の 島山先生』, 『새벽』 1957.4).

23) 위와 같음.

24) 『朝鮮日報』, 1932년 12월 28일, 「島山安昌浩 控訴權拋棄, 4년 징역이 만치안타, 金辯護士에게 言明」.

약해졌다는 소식을 친지들에게 전해주었다.²⁵⁾

형무소에서 보내고 받는 편지 모두 검열 대상이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 도산은 언제나 자신의 건강 상태는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를 친지들에게 보냈다.²⁶⁾ 여기 동아일보가 보도한 기사는 8월 17일자로 도산이 형인 안치호에게 보낸 편지이다.

내가 구금된 지 四個月에 이 만큼 健康이 보전되는 것을 다행으로 압니다. 消化 不良과 泄瀉은 아직 完差하지 아니하나 齒도 점점 아픈 것이 減하는 形便이오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飲食에 對하여는 잘 받아 먹었습니다마는 五十錢 價額의 것은 不可하오니 今後로는 二十錢價의 飲食을 差入케 하소서. 牛乳는 내가 이곳에 直接 사서 먹습니다. 尹宅 飲食이 다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달 그믐날까지는 저녁에도 면보를 먹게 하여 주소서.²⁷⁾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서대문형무소로 차입할 수 있는 음식은 50전 가격은 불가하고 20전 가격의 음식 차입이 허용된 사실과 우유를 사서 먹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서대문형무소 규정은 두 달에 한 번씩만 편지를 허용하였다.²⁸⁾ 도산은 부인에게 자주 편지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전하였다.²⁹⁾ 도산이 다른 이들에게 편지할 사정이 생기면 가족들에게 오랫동안 소식을 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편지 모두 검열당했기에 가족에게조차도 의증의 깊은 애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산

25) 『東亞日報』, 1932년 7월 31일, 「豫審의 安昌浩 監獄에서 呻吟」.

26) 『東亞日報』, 1932년 8월 31일, 「親知에게 보낸 獄中消息」, 8월 17일 安昌浩.

27) 위와 같음.

28) 독립기념관 소장, 「安昌浩가 이혜련에게 보낸 편지」, 1933.6.1.

29) “내가 평생에 당신에게 기쁨과 위안을 줌이 없었고 이제 느지막에 와서 근심과 슬픔을 주게 되오니 불안한 마음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가사와 아이들에 대한 모든 시름을 늘 혼자 맡게 하니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내가 조용한 곳에 홀로 있어 평소에 그릇한 여러 가지 허물을 생각하고 한탄하는 중에 남편의 직분과 아비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또한 스스로 책망하는 조건입니다. 또는 당신 이외에 미국에 체류하는 여러 친구와 동포들이 나를 동정하여 걱정들 하심에 대하여 황송하옵니다...”(독립기념관 소장, 「安昌浩가 이혜련에게 보낸 서신」, 1933.6.1).

의 성품 상 가족과 친지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항상 형무소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한 형무소 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기란 어렵다. 서대문형무소 독방에 투옥된 애국지사들은 봉투를 붙이든가 그물을 뜨는 일을 하며 하루 일과는 보냈는데, 도산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³⁰⁾

1) 서대문형무소 수감 실태

도산이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진행된 예심 訊問은 1932년 9월 5일(제1차), 9월 6일(제2차), 9월 7일(제3차), 9월 8일(제4차), 9월 9일(제5차), 9월 12일(제6회), 9월 13일(제7회), 9월 16일(제8회), 9월 26일(제9회), 그리고 10월 19일(제10회)에, 총 10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경성지방법원 판사 마쓰무라 후미오(増村文雄)와 서기 토요오카 토메요시(豊岡留吉)가 거의 한 달간 서대문형무소로 출장 와서 예심을 진행하였다.³¹⁾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申泰憲의 통역으로 진행된 신문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이상 여부가 없는지 진술자에게 열람시켜 내용 확인을 받고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³²⁾

예심 신문을 받는 중에 “공산주의를 연구한 일이 있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도산은 자신은 민족주의자이며 약소민족의 독립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민주정치를 희망하고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³³⁾ 그리고 “피고인은 장차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계속하여 운

³⁰⁾ 金正蓮, 같은 글.

³¹⁾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安昌浩訊問調書」, 『朝鮮思想運動調查資料』(第1・2輯), 1932・1933.

³²⁾ 위와 같음.

³³⁾ “아니오.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민족주의자 중의 한 사람이고,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가 주장하는 공산주의란 개인이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재산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계급제도를 폐지하여 무산자의 독재 정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는 경제문제만 해결되면 정치문제 기타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민족주의자는 약

동을 할 생각인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소. 앞으로도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운동을 할 생각이오.”라고 당당히 대답하였다.³⁴⁾

동우회 회원이며 흥사단원인 장성심이 김동원 장로의 부탁을 받고 도산을 면회한 적이 있었다. 장성심은 만일 일제가 법정에서 “만주 출병을 반대했느냐”라고 물으면,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해야 刑을 감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 때 도산은 “어찌 일국의 지도자가 減刑을 받아 자기 일신의 편안만 구하자고 거짓말을 하겠나.”라고 하면서 거절했다.³⁵⁾

예심 신문을 마치고 그해 12월에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자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은 무보수를 자청하며 변호를 앞다퉈 자청하였다.³⁶⁾ 변호사 金炳魯가 도산을 면회하고 변호를 자청했지만, 도산은 “숙원인 민족과업을 성취 못하고 적에게 사로잡힌 몸이 민족을 대할 면목조차 없다. 무슨 구구한 변론이 필요하겠느냐”³⁷⁾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그 후 변호사 李仁도 변호를 자청했지만 도산은 여전히 변호를 사절하였다. 그러자 이인은 법정 변호는 그만두고라도 수속상 처리만이라도 맡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도산을 설득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도산에게서 상의할 일이 있으니 면회 오라는 전보를 받고 이인은 바로 도산을 찾았다. 도산은 “법정 변론은 필요 없으나 옥 내외 연락할 사람이 필요하다”

소민족의 독립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계급제도와 재산의 사유를 부인하지 않고 또한 무산자의 독재 정치를 희망하지 않으며 민주정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과 함께 그 외 모든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사상과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약소민족의 해방을 도모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민족주의입니다. 단순히 약소민족의 독립을 도모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독립한 민족은 항상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를 포기하면 그 민족은 멸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安昌浩訊問調查書 제9회(1932.9.26.)」, 『朝鮮思想運動調查資料』 같은 자료).

34) 「安昌浩訊問調查書 제10회(1932.10.19)」, 『朝鮮思想運動調查資料』 같은 자료.

35) 張成心, 「女性이 본 島山先生」, 『기리기』 1968.3.

36) 독립기념관 소장, 「주요한이 미주 흥사단에 보낸 편지」, 1932.7.26.

37) 金學俊, 『佳人金炳魯評傳』, 民晉社, 1988, 230~231쪽.

며 김병로와 이인, 그리고 김용무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이렇게 하여 법정 변론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3명의 변호사가 변호계를 맡게 되었다.³⁸⁾

제1회 공판은 12월 19일 오전 10시 37분에 경성지방법원 제 4호 법정에서 山下未吉 재판장의 심리로 柳原鍾浦과 川崎 猛 양 판사의 배석과 佐佐木義久 검사의 입회하에 개정되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새벽 6시경부터 방청객이 모여들어 개정하기까지 2백여 명을 넘었다. 그러자 소관인 서대문경찰서에서는 吉野藤藏 고등계 주임 이하 정복 경관 다수가 출동해 도산 친형 안치호를 비롯해 평양·황해도·함남 등 멀리에서 방청하러 온 방청객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마친 후, 입정시키고 재판을 개시하였다. 이날 재판장은 사실 심리에 들어가서 公訴 시효 전의 사실까지를 물은 후 11시 22분에 이르렀을 때, 본건 심리가 치안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며 방청 금지를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특별히 친족 7명에 대해서만 특별 방청이 허용된 가운데 심리가 진행되었다.³⁹⁾ 도산은 11시 40분경에 간수장의 보호하에 출정하였고 이날 특별 방청석에는 경성제국대학 速水溫 博士를 비롯해 竹內健郎 경찰부장, 服部伊勢松 서대문 경찰서장, 三輪 경찰부 수사계 주임 외 헌병 소위 1명 등이 재판장 배후에 착석하였다. 변호석로는 金炳魯, 金用茂, 李仁, 楊潤植, 辛泰嶽 등 여러 변호사와 평양에서는 金志健 변호사가 출정해 있었다.⁴⁰⁾

1932년 12월 26일 오전 11시 45분 경성 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山下 재판장과 佐佐木義久 검사 입회하에서 도산은 징역 4년 미결 구류 50일의 최종 판결이 구형되었다. 도산이 피검된 지 8개월만이였다. 이 날도 2백여 명 가량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기 시작해 吉野藤藏 고등계 주임 이하 정사복경관 10여 명이 법정 내외를 엄중 경계하는 가운데 공판이 시작되었다. 오전 11시 45분 재판장은 도산을 피고인석으로 불러세운 다

38) 「안창호와 변호사」, 『東光』 37호, 1932.9.1.

39) 『東亞日報』, 1932년 12월 20일, 「島山安昌浩公判 今朝 第四號法廷에서 開廷」.

40) 위와 같음.

음 15분간 판결문의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12시 정각에 폐정을 선언하였다. 金用茂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청하여 도산에게 공소여부를 묻자 도산은 가족과 의논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답하고 간수에 이끌려 퇴정하였다.⁴¹⁾ 이처럼 도산은 법정에서 공소여부에 대해 명백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7일 오전, 변호사 金用茂가 담임 변호사 일동을 대표해 서대문형무소로 가서 도산을 면회하고 공소여부에 대한 의향을 묻자, 도산은 공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⁴²⁾ 형무소를 방문한 辛泰嶽 변호사에게 “30년 독립운동이 겨우 4년 징역밖에 남은 것이 없소.”⁴³⁾라고 유머 있는 어조로 말하며 4년의 징역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도산은 판결을 받았을 때에 바로 공소권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 하나 자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변호사 제씨와 친지에 대한 예의가 아닐 듯하여 이렇게 양해를 얻어 복역하고자 했다는 뜻을 분명히 표하였다.⁴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변호사 김병로는 보석원을 제출했으나 허가되지 않았다.⁴⁵⁾ 미주에서 도산을 위한 재판 찬조금이 도착하자, 일제는 이들 자금의 출처를 혈안이 되어 조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1933년 1월 24일 오후 4시에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趙鏞夏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을 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佐佐木 검사는 서대문형무소에 복역 중인 도산을 증인으로 호출해 편지를 왕래한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다.⁴⁶⁾

도산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예심을 받고 있을 때, 혁명 동지인

41) 島山安昌浩에게 求刑대로4년言渡(『中央日報』 1932.12.27).

42) “죄의 경중은 물론하고 공소할 의향은 없소. 판결 받는 즉시에 공소권 포기를 언명치 아니한 것은 나를 위하여 애쓰시는 변호사 여러분에게 미리 의향을 말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당한 줄 안 까닭이오... 이번 나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동정하여 주신 친지와 동료 여러분께는 깊이 감사함을 드리고 또 내게 관해서는 안심하기를 바란다고 해주시요”(『東亞日報』, 1932년 12월 28, 「島山安昌浩 控訴權拋棄」).

43) 『東亞日報』, 1932년 12월 28일, 「島山安昌浩 控訴權拋棄」.

44) 『朝鮮日報』, 1932년 12월 28일, 「4년 징역이 만치안타, 金辯護士에게 言明」.

45) 독립기념관 소장, 「주요한이 홍사단에 보낸 서한」, 『도산안창호자료』, 1932.8.19.

46) 『東亞日報』, 1933년 1월 25일, 「趙鏞夏 公판회부, 안도산 증인호출 신문」.

李剛이 아내와 딸을 데리고 서대문형무소 부근 館洞에 방을 얻어 살림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차입하며 옥바라지를 하였다. 이강도 중국에서 체포되어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투옥, 만기로 출옥한 상태였다.⁴⁷⁾

2) 서대문형무소의 한국인 간수

당시 전국의 설치된 형무소 간수는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복무하였다. 교무계 통역 간수로 복무하였던 평북 朔州 출신의 車億富와 평북 창성 출신의 姜淵明, 그리고 간수장이었던 평북 용천 출신인 文致然은 애국지사들에게 극비리에 국내외 정세를 간간히 알려주었다. 어느 누가 어느 방에 새로 입감되었다는 등 여러가지 소식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⁴⁸⁾ 서대문형무소 간수 박영준은 도산을 찾아오는 면회자가 있을 때는 교묘한 방법으로 일본인 입회 부장을 다른 곳으로 따돌리고 그 틈을 타서 도산을 면회실로 모시고 갔다고 한다. 면회실로 들어설 때면 도산은 힘 있게 손을 잡으며, “우리 握手합시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마 우리 동포의 따뜻한 손을 잡는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목메인 말을 건네었다.⁴⁹⁾ 그의 회고에 의하면 이광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의 복도 차입하고 면회도 했다고 한다.⁵⁰⁾ 도산이 대전형무소에서 복역을 하

47) 독립기념관 소장, 「주요한이 홍사단에 보낸 서한」, 『도산안창호자료』, 1932.8.19.
이강은 공립협회 당시 원동전원위원으로 임명, 연해주에 파견되어 원동사업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러시아영내에서의 활동을 포기한 이강은 45세 되던 해인 1923년 상해로 탈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한국노병회에 참가하였고 1925년 1월 28일에 홍사단원동임시위원부 통상단원으로 입단하였다. 그 후 홍사단의 임무를 띠고 이상촌기지를 돌아보고자 남중국 방면을 여행 중 1928년에 廈門 중국인교회에서 ‘조선현상과 교육형편’이라는 강연을 하던 도중 일본 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어 3년간 재류금지 처분을 받고 臺灣과 長崎를 거쳐 부산을 통해 입국해 평양으로 호송되었다. 이강은 평양경찰서 고등계에서 취조 받았으며 평양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과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루었다. 1930년 9월 2일 만기 출옥한 이강은 기회를 엿보다가 중국 福建省으로 재차 망명하였다.

48) 金正蓮, 「刑務所の 島山先生」, 『새벽』 1957.4.

49) 朴寧峻, 「獄中の 島山」, 『공함』 1961.4.

고 있는 동안에는 金顯泰 간수장이 음으로 양으로 도산의 신변을 보호해 주었다.⁵¹⁾ 동우회사건 때 鍾路警察署에 안경을 낀 李순사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처럼 보이는 얌전하게 생긴 간수와 李순사와 같이 勤務하고 있던 蔡순사라는 한국인은 留置된 동우회 단원들에게 많은 편의를 보아 주었다. 김여제가 도산을 위해 담배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자 李순사는 자신이 當番인 날 밤에는 監房 밖에서 담배 불을 붙여 鐵窓門 틈으로 도산에게 담배를 건네주었다고 한다.⁵²⁾

서대문형무소의 일본인 간수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상범’과 ‘정치범’들에게 유독 가혹했지만 한국인 간수들은 일본인 직원들의 이목을 피해 가면서 그들의 옥중 고초를 위로했으며, 사회의 소식과 일본의 정책 방향을 알려주고 서신과 접견을 통한 내외 연락의 편의를 음으로 도와주었다.

4. 대전형무소 이송

1심에서 공소권을 포기하고 서대문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도산은 1933년 3월 28일에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는 ‘思想犯’과 ‘보통범’들이 함께 복역하였다. 그러나 도산과 같은 민족지도자나 애국명망가가 入監하게 되면 보통범들에게까지 사상적 영향력을 주게 된다

50) 도산은 面會席에 마주 앉은 李光洙를 향해 ‘春園, 내가 海外에서 생각할 때에는 國內同胞들은 全部가 日本人에게 同化되어 民族精神이 餘地없이 抹殺되었으리라고 推測하였더니 이번 故國에 돌아와 보니 暴虐한 日人治下에 있는 이 監獄 안에도 이분 (나를 가리키면서)과 같이 民族正氣를 發揮하고 있는 것을 볼 때 地獄에서 佛陀를 만난 것같이 기쁜 마음 禁할 수 없소이다. 우리 민족이 아직 滅亡하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끼게 되었소. 春園은 이분과 아무쪼록 자별하게 지내주기 바라오.’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先生을 仰慕하는 마음 더욱 간절하였던 것이다.”고 회상하였다(朴寧峻, 「獄中の 島山」, 『공함』 1961.4).

51) 위와 같음.

52) 金與濟, 「獄中에서 島山先生을 모시고」, 『기러기』 1966.5.

는 점을 조선총독부는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보통 죄수의 사상이 사상범의 사상에 감염되는 사실을 긍정하고 사상범을 격리시켜서 복역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형무행정을 하기로 결정”⁵³⁾하였다. 1932년 도산이 투옥되었을 당시 서대문형무소에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수감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고민이 뒤따랐던 것이다. 그래서 ‘사상범’들을 별도로 수용할 전용 감옥으로 지정된 곳이 대전형무소였다. 조선총독부는 도산을 비롯해 具然欽, 崔益翰 등 사상범으로 분류된 독립운동가 32명을 1933년 3월 28일에 대전형무소로 이감 조치하였다.⁵⁴⁾ 당시 대전형무소에는 ‘사상범’으로 분류된 복역수가 500여 명복역 중이었다.⁵⁵⁾ 1919년 5월에 개소하여 만세시위자들을 수감하였으며 여러 곳에 신축된 감옥 중에 하나인 대전감옥⁵⁶⁾은 1919년 5월에 개소하여 1923년에 대전형무소로 이름을 바꾸었고 독립운동가 등 이른바 사상범들을 수감하였다.

대전형무소는 중(重)구금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감옥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감옥을 만들었으며 그 안에 다시 이중벽을 쌓아서 내부로부터의 탈출을 막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내가 去月 28일에 이 大田刑務所로 移轉하였습니다. 當日 上午 半日間에 溫和한 春風을 벗하여 近 30年間 그림던 南朝鮮에 旅行하는 동안에 快感 悲感이 並發하였습니다. 이곳에 와 본즉 地方이 閑寂한데 處所가 靜雅하고 衣服과 飲食이 質素합니다. 또는 道德的 感化의 空氣가 있는 듯하오니 처음으로 當到한 나로 하여금 修道院에 들어온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무엇으로든지 京城에 比하여 많이 나으니 나를 爲하여 安心하소서. 나는 그간 食慾은 平日보다 여러 培가 增加하였으나 아직 消化力이 不充分

53) 『東亞日報』, 1933년 3월 28일, 「思想囚와 普通囚의 분리집행을 결정」.

54) 위와 같음.

55) 위와 같음.

56) 대전감옥은 1919년 5월 7일부로 발표된 「朝鮮總督府監獄及分監名稱位置改正の件」에 의해 시행되었다. 대전감옥은 1918년에 기공했으며 1919년 이후 감옥에 투옥된 수형자들을 사역하여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공사하여 완공하였다(『每日申報』 1919.5.8, 「大田監獄設置」).

하고 등에 神經痛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全體로 比하여 보면 健康도 前日 보다 낫습니다. 朝鮮詳細地圖 한권 사 보내시오. 금강산유기 백두산유기도 求送하소서. 4月 2日 安昌浩.

위의 내용은 대전형무소로 이감된 후 도산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도산은 “더욱 평안히 지내오니 나를 위하여 근심하지 마시오. 유숙하는 감방도 매우 정결하고 광선과 공기가 잘 통하며 음식도 비록 간단하나 매우 정결하고 매일 삼시로 더운 햇밥을 주니 위생에 합당하고 구미에도 맞아서 잘 먹습니다. 또는 경성이나 이곳에서 다 아직 괴로운 별 사건을 당함이 없었나이다.”⁵⁷⁾라고 전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불편함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자하는 도산의 성품 탓에 감방 형편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알 수 없다.

형무소 당국은 사상범이나 정치범들에게 항상 사상전향을 유도하곤 했는데, 도산은 思想未轉向者로 분류되었기에 독방에서 생활하였다. 오랜 독방 생활에서 도산의 심신은 점차 쇠약해져갔으며 위병으로 인해 독거생활을 더 이상 감내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사상범으로 분류된 수인들도 刑務作業에 동원되었는데, 당시 형무작업으로 얻은 소득이 형무소 운영비용의 40%를 충당했다고 한다.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운형⁵⁸⁾도 그물(網) 뜨는 일과 종이를 꼬아서 치룻(가로 퍼지게 둥근이 결어 만든 그릇) 만드는 일 두 가지 작업을 했다.⁵⁹⁾

…先生이 大田刑務所에서 服役을 하시는 동안에는 韓國人 職員으로서 金顯泰(김현태) 看守長이 陰으로 陽으로 先生의 身邊을 돌보아 드렸으며 先生의 親戚으로는 姪女 安麥結(안맥결) 孀(當時 未婚)이 平壤에서 面會를 다녔다. 先生이 服役 中에는 思想未轉向者로 認定되어 獨房에서 종이로 노끈을 꼬아 手工品을 만드는 作業을 하셨는데 長久한 時日 獨居生活

57) 독립기념관 소장, 「安昌浩가 이혜련에게 보낸 서신」, 『도산안창호자료』, 1933.6.1.

58) 몽양 여운형은 1930년 6월 9일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후, 서대문형무소에서 수인생활을 하다가 1930년 9월 20일 대전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인생활을 하였다.

59) 『東亞日報』, 1931년 2월 13일, 「大田刑務所 在監者 八百餘」.

을 계속하셨던 관계로 몸이 점차 衰弱해 가시고 胃病으로 因하여 獨居生活를 以上 더 堪耐하기 困難하였으므로 先生은 「나의 故郷은 옷칠의 生産地인 만큼 나를 漆工場에 出役시켜 주면 漆加工技術을 배워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後進을 指導하면서 餘生을 보내고저 하노라.」는 意思를 表示하시어 卽時 先生의 意思에 따라 漆工場에 出役을 許하는 同時에 先生의 思想이 轉向되었다는 것으로 認定되어 假出獄의 手續을 取하게 되어 出監하실 때에는 平壤에서 姪女 安麥結(안맥결) 氏가 出迎同伴하였다.

先生은 獄中에 계실 때에도 祖國의 獨立과 民族의 自決을 위하여는 信念을 굽히지 않으셨으며 先生의 高潔한 人格과 泰山不動의 氣概 오늘 이 難局에 處한 우리 國民 一層 先生을 思慕하는 마음 禁할 수 없다.⁶⁰⁾

대전형무소에서 도산은 바늘로 옷을 꿰매는 裁縫 일을 하면서도 “氣分上으로도 매우 좋다”라며 매사 긍정적으로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한다.⁶¹⁾ 종이로 노끈을 꼬아 만드는 지승공예품을 제작했던 도산은 오랜 독방 생활로 심신이 쇠약해지자 “나의 고향은 옷칠의 생산지인 만큼 나를 漆工場에 出役시켜 주면 漆加工技術을 배워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후진을 지도하면서 여생을 보내고저 하노라.”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무소 측에서는 이러한 청원을 들어주어 도산은 칠공장에 출역하여 옷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어떠한 일에 임하여도 格物致知, 務實力行의 정신으로 임했던 도산은 형무작업을 하면서도 정성을 다해 노끈을 꼬아서 그릇과 화병 등을 만들고 그 위에 옷을 칠하여 작품으로 완성시켰다.⁶²⁾

1935년 2월 10일 오후 1시 20분에, 도산은 형기를 남기고 가출옥하여 대전 형무소 문을 나섰다. 본래 만기 출소일은 1935년 11월 6일인데 일황의 황태자 출생을 기하여 일본내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수감자들에 대한

60) 朴寧峻, 「獄中の 島山」, 『공함』 1961.4.

61) 金性業, 「二十五年만에 島山會見記」, 『三千里』 1934.8.

62) 도산이 직접 제작한 지승공예품이 김현태 후손에 의해 소장되어 있다가 홍사단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2013년 11월 4일에 홍사단에 기증되었다. 도산은 1935년 2월 가출옥하면서 대전형무소에서 복무했던 김현태 간수장에게 고마움의 사례로, 직접 제작한 지승공예 기법에 옷칠을 한 발우 10개로 이루어진 바리때와 바구니 1개를 선물하였다. 이들 공예품은 6.25전란 중에도 김현태 집안의 가보로 전수되어 왔다.

감형 조치가 내려졌던 것이다.⁶³⁾ 대전형무소를 출옥할 때, 가족들과 朱耀翰을 비롯한 친지들이 마중하였다. 대전역 정거장 식당에서 잠깐 휴게를 취한 후 도산 일행은 오후 3시 27분 대전발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도착하였고⁶⁴⁾ 평양행 기차로 돌아왔다. 평양에서 여운형과 조만식을 비롯한 4천 여 군중이 평양역에 도착하는 도산을 영접하였다.

5. 2차 서대문형무소 수감

1) 동우회사건과 피체

출옥한 이후 서울로 온 도산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40여 일 동안 치료와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바로 이광수 등과 함께 湖南, 嶺南, 幾湖, 關西 지방의 순으로 장기 순회 여행길에 나섰다. 京城, 津南浦, 平壤, 宣川 等地에서 遊說했으며 가는 곳곳마다 동포들의 따뜻한 환영과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 그러나 유세 도중 일경의 감시와 제재를 받아 도중에 중단되는 일이 잦아지고 급기야 일제는 도산을 환대할 목적으로 요정 혹은 음식점, 그 어떤 公廳에서도 대중이 모이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선천읍을 방문했을 때에 北敎會에서 환영 주일예배를 보고자 했지만 일본 경찰은 도산의 설교 혹은 기도도 올리는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한국인 형사들을 동원해 감시하는 바람에 예배에 참석했을 뿐이었다.⁶⁵⁾ 그럼에도 도산은 장

⁶³⁾ 일본 황태자 아키히토(明仁)가 1933년 12월 23일에 태어나자, 일본 및 한국내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에게 일본 황태자 탄생을 축하하는 이른바 ‘恩赦’라는 명목의 감형 조치가 내려졌다.

⁶⁴⁾ 『朝鮮日報』, 1935년 2월 11일, 「島山安昌浩 今日 大田서 假出獄」.

⁶⁵⁾ 이 날 예배는 백영립목사의 주례로 진행되었다. 1천여 명을 수용하는 北敎會는 마루 위에 앉는 平座式 敎堂이었는데, 중앙 강단 뒷벽에 직선으로 바람벽을 따라서 그 밑에 固定式 長椅子가 연달아 마련되어 있었다. 이때 목사는 다른 모든 교인들은 누구나 다 마루자리에 내려앉으라고 부탁했으며 도산만이 홀홀히 長椅子에 앉아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것까지 금하지는 못했다고 한다(張利郁, 「安島山 秘錄」, 『思想界』

리욱과 함께 지방순행을 하면서 한국 민족에 대한 3가지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조선의 마음은 옛날 (합병 당할 당시)의 그것과 달라진 것이었다. 진짜 親日派는 있지 않다.
2. ‘一視同仁’이니 ‘內鮮一體’니 하는 말은 日本이 수단으로 쓰는 거짓말이다. 또 ‘內地’니 ‘皇國臣民’이니 하고 말하는 동포가 있으나 이것 역시 수단으로 쓰는 거짓말이다. 이것은 양방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것은 거짓과 거짓이 어울린 통치다. 거짓 + 거짓 = 무엇인가. 그 대답은 自明하다.
3. 지금 우리 동포가 일본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듣는다. 日本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아첨하지도 말라. 이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믿는다.⁶⁶⁾

이처럼 도산은 일제의 황민화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민족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으며 그 어떤 탄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고향 평양에 와서는 모란봉을 돌아본 후 남산현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선산에 성묘도 하였다. 그리고 순안 안식교병원에 15일 동안 입원해 위장병 치료를 마치고 용강 온천⁶⁷⁾에 가서 한 달쯤 휴양하였다. 그런 후에 大寶山 자락에 송태산장⁶⁸⁾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공사를 감독하였다. 담장을 손수 쌓았으며 마당 가운데는 한국 지도 모양의 연못을 파고 그 연못에 금붕어를 키우기도 했다. 산장 안 방안 책상 앞에는 개성 〈선죽교 다리〉 그림을 걸

1965.3).

⁶⁶⁾ 위와 같음.

⁶⁷⁾ 도산이 용강 온천으로 휴양차 갔을 때 김선량의 회고에 의하면, “약 50리 되는 시골 길 6, 7처에 그 부근에 사는 동포들이 나와 수십 명 또는 백여 명씩 모여서서 선생을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하던 일이다. 본국을 떠나신지 20여년 만에 돌아오신 선생은 이처럼 따뜻한 동포애에 감개무량해 하였고 거리에 환영 나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다”(김선량, 「島山 선생님을 追慕」, 『기리기』 1968.3).

⁶⁸⁾ 장리욱은 송태산장은 趙信誠 여사의 소유라고 회고하고 있다. 도산으로 인해 송태산장은 점차 민족주의자들의 메카가 되고 있었다(張利郁, 「安島山 秘錄」, 『思想界』 1965.3).

어 놓아 고려 말 충신 정몽주의 지조와 절개를 마음속에 새기었으며 구약성경을 아침저녁으로 읽었다.⁶⁹⁾ 그렇지만 이 같은 평화롭고 안온한 생활이 도산에게 오랫동안 허락되지 않았다.

1937년 6월, ‘동우회사건’으로 도산은 다시 일경에 체포되었다. 수양동맹회와 동우구락부가 통합해 수양동우회가 되고 수양동우회는 1929년 11월 동우회로 개명한 바 있다.⁷⁰⁾ 동우회는 내부 노선의 갈등으로 부진했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927년 8월호를 마지막으로 휴간했던 『東光』 잡지를 1931년 1월호부터 다시 속간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동우회 중앙위원회에서는 회원의 질적 향상 및 청년 훈련 사업 개시·기금 설치 및 가입회원의 배가·민중 교양 운동 등의 사업 수행을 목표로 내걸은 4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동우회의 이러한 자체 계획은 도산이 국내로 압송되어 들어오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1920년대에 조선총독부는 수양동맹회와 수양동우회 등을 체제 안에서 충분히 요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산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의도한 방향대로 나가지 않았다. 민족주의로 무장한 동우회 회원들이 사회 각계 각층에 포진해 나갔으며 미주 흥사단·중국의 흥사단원동임시위원회 조직이 상호 소통하며 결집되어가자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수양 혹은 민중 계몽을 표방하며 수양회·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잡지 『東光』을 발행하는 등의 동우회의 표면활동 등을 예의 주시하였고 동아일보와

69) 李善行·張成心·安聖潔, 「女性이 본 島山先生」, 『기러기』 1968.3.

70) 1922년 2월 12일 서울 야주개(唐珠洞)(當時 西大町一丁目九番地)에 위치한 이광수의 부인인 허영숙의 英惠醫院에서 조직되었다. 한편 대성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평양에서는 1923년 1월 16일 同友俱樂部가 발기되었다. 修養同盟會와 同友俱樂部 두 단체는 1925년 10월 10일과 11일 府倉田里 48번지 김동원의 집에서 合同 결의를 하고 修養同友會로 재편되었다. 이후 1929년 7월 20일 의사회 투표를 거쳐 11월 23일 회명을 ‘동우회’로 개명하였다. 조선총독 사이토의 기만적 문화통치가 민족본질을 초래하자 그간 비정치운동을 표방한 수양동우회는 조직 내부에서 정치운동으로 轉向하자는 주장이 일어났다. 미주 쪽에서는 1926년에 郭林大가 흥사단을 직접적인 혁명단체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흥사단 원동위원부에서는 직접 혁명당으로 개조하거나 혹은 사회주의단체로 변혁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미주 흥사단 본부와 상해 흥사단 원동위원부 및 수양동우회 간에 규약 개정에 관한 협의와 절충을 거듭한 결과, 同友會가 출현하였다.

조선일보 내의 동우회 인물들의 추이와 기독교 동우회 인물들의 동향을 매의 눈으로 주목하였다. 일제는 조만식이 주도한 조선기독교 절제운동회의 “기독교정신에 의하여 절제생활과 사회정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이를 동우회 활동으로 파악⁷¹⁾하였다. 1933년 3월 31일에 평양 대성학우회 중심 인물들에 의해 주도된 조선광업주식회사 창립이 일본인 자본가의 조선 광업 진출에 자극받아 조선인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에 대해서도 주시하며 경계하였다.⁷²⁾

1933년의 동우회 이사회가 회무 확장을 결의하고 회원도 6월에 130명을 헤아리자, 이 같은 현상의 변화와 도산의 대전형무소 출옥을 연계지었다.⁷³⁾ 또한 1934년 1월 6일에 개최된 동우회 이사회에서 “민족운동은 영구하고 민족은 영원한 實在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내세우자 이 또한 일제를 자극하였다. 동우회는 조선민족운동의 3대 기초사업으로 ‘지식인 계급’의 결성, 농민 및 노동자의 계몽, 협동조합의 조직을 결의했으며 ‘지식인계급’을 하나의 이론하에 단결시키며 조선 및 조선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개인 이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정신적 훈련을 하고 이러한

71) 조만식은 당시 평양기독교청년회 총무, 崇仁학교 교장 ‘전 신간회 평양집행위원장’, 조선물산장려회장, 조선공업장려회장, 民立大學期成會 지부장, 關西체육회장, 平壤節約貯金殖産組合 이사, 關西協同組合經理社 이사장, 평양상공협회 이사장 등 많은 방면에 관계하며 활동하고 있었는데, 일제는 이들 각 단체들도 동우회의 세력범위로 파악하였다(「修養同友會의 活動狀況」,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安課, 『高等警察報』 4, 1934.6).

72) 조선광업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은 모두 記名式으로 하며 조선인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제7조)” 라고 규정했으며, 총회의 席上에서 오윤선은 현재 외국인…의 손에 맡겨져 있던 조선의 광업을 우리들 조선인의 손에 의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73) 위와 같음. 이광수는 『동광』 1932년 2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조선민족운동의 3개 기초사업’으로 1) 지식인계급 결성. 2) 농민, 노동자 계몽과 생산 향상. 3) 협동조합운동을 들었다. 회원의 실천강령으로는 1) 단결의 신의를 지킬 것. 2) 명확한 개인생활 및 민족생활의 이론을 가질 것. 3) 실행할 것. 4)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존중하고 자신을 희생시킬 것. 5) 일종의 학술 또는 기예를 완전하게 습득하여 일종의 건실한 직업을 가질 것. 6) 단결의 규칙과 자신이 정해진 지도자의 지도에 복종할 것. 7) 조선과 조선민족을 사랑하며 자기 개인 이상으로 생각할 것 등을 내세웠다(위의 글).

주의정신으로 훈련된 자가 1,000명 이상에 달하면 그 때에 조선은 지금의 조선과는 전혀 다른 조선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논설이 ‘동광’ 잡지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민족협동전선체를 자처하던 신간회와 근우회가 해산되자, 동우회는 순수 민족운동단체의 유력한 존재가 되었다. 일제가 사상단체의 집회를 일체 금지하는 가운데 공산주의운동이 침체되어가자 동우회는 현존 단체 부활 혹은 재수립이라는 방도로써 민족운동단체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⁷⁴⁾ 일제는 이제까지 도산을 自治主義者로 몰아 민족분열에 이용하면서 도산의 영향력을 짐짓 무력한 것으로 몰아가고자 했다.⁷⁵⁾ 그러나 전국에 분포된 동우회 회원과 미주 흥사단, 그리고 중국의 흥사단 원동위원부 등의 세력이 조직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하고 두려워하였다.

도산은 대전형무소에서 출옥한 후, 국외로 나갈 것을 권유받았지만 동우회와 국외의 흥사단 운동을 연결시켜 민족운동의 힘을 결집시키고자 국내에 남고자 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황민화를 획책하고 있었던 일제는 용인할 수 없었다.⁷⁶⁾

74) 「修養同友會의 活動狀況」, 『高等警察報』 4, 1934년 6월.

75) “오랫동안 해외에서 민족운동에 奔命하였던 안창호는 세계의 추세로부터 보아 조선 독립이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크게 깨달음과 동시에 종래의 운동방침을 전환하고 친히 나서서 일시의 制裁를 달갑게 받고 신체의 자유를 얻은 후 합법적 自治운동에 투신하려고 결심하고 있으며 이번 체포된 것은 자신이 그 기회를 선택한 것이다. 그는 자수하려고 한 적이 있으나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경력으로 비추어 자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선동포의 자신에 대한 신뢰 및 동정을 받기 어려워져 이후의 활동에도 지장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출옥 후 조선민족의 문화향상과 정치적인 훈련에 노력하고, 조선의 선각자로서 自治運動을 이끌어 나갈 것을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옥 후의 조선 내 흥사단계 분자의 활약은 매우 팔목할만한 것이라 云云…”(위의 글).

76) 지난 봄 전해진 바에 의하면, 현재 미국 체류 중인 흥사단의 최고 수뇌자 송종익(宋鍾翊)(安昌浩의 후임)이 수십 년 만에 조선에 돌아오려 하고 있으며 이 자는 흥사단의 재미 본부와 상해 원동 지부가 소유한 약 20,000불의 자금을 휴대하여 온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安昌浩 출옥 후 조선 내에 안착지를 구하려고 할 것이므로 수양동우회의 활약은 급후 더욱 강해지게 될 것이며, 일면 흥사단은 海內 중심주의로 전향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관측되는 바이다(위의 글).

동우회가 독립운동 단체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혈안이 된 일제는 1929년 도산이 필리핀으로 떠나기 하루 전인 2월 8일에 상해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동지 여러분에게”⁷⁷⁾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명백하게 복사판으로 하여 각 동지들에게 나누어 보내니 적들이 입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⁷⁸⁾라는 글을 첨부해서 보낸 인쇄물을 유력한 증거물로 삼았다. 이 편지는 당시 논란 중에 있었던 홍사단의 정체성에 대해 수양단체가 아니고 혁명투사 단체임일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⁷⁹⁾ 식민지 동화정책 아래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 보존하고 최종의 독립과 제를 이룩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느냐를 고민하며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약법이나 강령은 총독부의 법적 테두리에서 정하나 내면의 진정한 의미의 목표는 별도로 새긴다는 이중의 전략을 쓰고 있다.

전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이란 문구의 의미는 한국 혁명에 헌신한다는 의미이지만 단체로서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진의를 구실로 하지 않고 문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신흥역량의 의미는 혁명역량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상기의 방식을 도입하여 국외에서는 혁명 두 글자를 노골적으로 표시하려는 사람이 있지만, 만약 국외에서 그렇게 사용하면 국내에서는 임시로 그 문자

77) 이 인쇄물은 1934년 5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文燦奎(전라북도 부안의 기독교 회 목사)에게서 압수한 것이다(동우회관계자 검거에 관한 건, 京高特秘 제1373호의 9, 1937.7.23).

78) 「同友會의 真相」,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思想彙報』 12, 1937.9.

79) …우리 홍사단은 건전한 인격과 신성한 단결을 도모하는 것에 목표를 세우고, 각자 동지들이 맹세하여 성립된 단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홍사단은 평범한 수양주의로 성립된 수양단체가 아니라, 한국의 혁명을 중심으로 투사의 자격을 양성하고자 하는 혁명훈련단체입니다.’ …홍사단은 평범한 수양을 위한 수양단체로 내버려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투사적인 인격을 훈련하는 훈련기관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단체를 혁명당으로 변모시키지 않을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이 단체를 변화시켜 혁명당으로 개조한 후에도 훈련기관은 그대로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우리는 혁명을 이해의 측면에서 볼 때, 홍사단을 혁명당으로 변화시키기보다 별도로 혁명당을 조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國會圖書館編, 『島山安昌浩 資料集』 I, 1997, 250쪽).

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국외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지 동지를 모집할 때 내용과 진의를 이해하도록 하는 선에서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⁸⁰⁾

일제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들어 동우회가 국내외의 민족주의자를 총망라하여 광범위한 민족운동을 전개하며, 그 중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기 한 달을 앞두고 사전 예비 구축처럼 민족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혈안이 되었다.⁸¹⁾ “동우회는 원래 하나의 수양단체로 간주되어 왔으나, 이번 同團은 북미 로스앤젤레스에 그 본거를 가지고 있는 홍사단과 異名同體로서 표면상 수양단체를 표방하는 교활한 계책으로 당국의 단속을 면하고, 裏面에 있어서는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여 집요한 운동을 계속하여 왔다”⁸²⁾며 홍사단운동이 임시정부나 기타 민족주의 단체와 같은 급진적인 운동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며 국내외를 망라하여 회원이 600명 넘는⁸³⁾ 사실도 일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1937년 5월 경성 基督教青年勸勵會에서 禁酒운동 시행을 계획하고 ‘멸망에 빠진 민족을 구출할 기독교인의 역할’ 운운의 문구가 들어있는 인쇄물이 회원들에게 우송되자, 관할 경찰서에서는 동우회의 서기 李良燮을 구속·취조하고, 관련 인물들이 동우회 인물이라는 혐의를 잡아 관계자들을 취조하였다. 그 결과 동우회는 홍사단의 한국 내에 별동단체라는 확증을 갖고 전면 수사에 착수하면서 ‘동우회사건’은 시작되었다. 1937년 4월 어느 날, 종로경찰서 형사가 동우회 이사장 주요한을 찾아와 동우회를 해산하는 것이 어떠냐며 넌지시 제안하였다. 이 문제는 이사회를 열

80) 「同友會의 真相」,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思想彙報』 12, 1937.9.

81) 요즘 일본, 조선을 불문하고 공산주의 운동이 쇠퇴하고, 더욱이 일지사변(日支事變·중일전쟁)이 악화됨에 따라, 이들 민족주의 운동은 향후 더욱 증가되고 노골적으로 될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단속과 査察 등 엄중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위와 같음).

82) 「同友會의 真相」, 같은 자료.

83) 위와 같음.

어야 한다고 주요한이 대답하자 이사회회의 회의 진행을 일본말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일제의 황민화 방침을 강압한 것이다. 1937년 6월 6일 새벽, 종로경찰서 고등계는 동우회 간부들의 가택을 수색하고 이광수, 김윤경, 박현환, 신윤국 등 10여명의 동우회 회원을 검거하였다. 서울에 이어 평양과 선천 지역에서도 검거 선풍이 일어났다. 도산은 평양 송태산장에서 6월 28일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경기도경찰부에 유치되었다. 대전형무소에서 가출옥한 지 28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 것이다.

1937년 10월 28일 부산에서 聖貧學舍를 개설해 도시빈민운동을 하고 있던 宋昌根 목사가 체포되어 취조 받는 과정에서 잔악한 고문을 받았다. 모진 취조과정 끝에 공판에 회부된 사람 중에는 “늙은이(안창호-필자)가 세계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미리 살피지 못해서 우리 일을 이렇게 까지 惡化시켰다”⁸⁴⁾고 원망하는 이들도 나왔다. 1937년부터 1938년에 이르기까지 총 181명(기소 49명, 기소 유예 57명, 기소 중지 75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종로경찰서로 송치되었다.⁸⁵⁾ 기소된 49명은 변호사·의사·교육자·목사 및 자산가 등, 지방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종로경찰서에는 도산을 비롯해 50여 명이 투옥되어 취조를 받았지만 회원간에 서로 만날 수 없었다.

종로경찰서에서 취조 받는 동안 송창근 목사는 “더럽고 질퍽하고 냄새나는 지하실 시멘트 바닥은 짐승도 못 살 곳이었고, 꼭대기 작은 들창에서는 눈보라가 쳐들어 왔는데 그렇게 추울 수가 없었다”고 당시의 유치장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증언하였다. 종로경찰서의 불결하고 추운 환경에서 도산의 齒牙는 또다시 말썽을 일으키고 胃腸과 肺 상태는 악화되었다. 3, 4일간씩 便을 통하지 못해 끓이지 않은 기침소리와 폭발하는 트림, 요란한 방귀 소리는 도산의 건강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급박한

84) 張利郁, 「島山이 永眠한 그 후」, 『기러기』 1970.3.

85) 1937년 8월 10일 경성 지회 관계자 55명(기소 15명, 기소 유예 23명, 기소 중지 17명)을 「치안유지법」 위반 송치하였고, 동년 11월 1일에는 평양·선천 각 지회 관계자 93명(기소 22명, 기소 유예 13명, 기소 중지 58명)을 그리고 1938년 3월 22일에는 안악지회 관계자 33명(기소 12명, 기소 유예 21명)을 송치하였다.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주었다.⁸⁶⁾ 건강했던 송창근이 가출옥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골이 상접해졌고 초췌해져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당시 일경의 취조와 신문, 그리고 유치장 생활은 가혹하기로 유명하였다.

도산은 7월 25일, 鍾路警察署 내에 10개의 유치장 중 제 1호실에 투옥되었다.⁸⁷⁾ 이 감방에는 이미 김여제와 白永燁 牧師의 아들이 留置되어 있었다. 김여제는 투옥되었을 당시 종로경찰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留置場 안에 設備되어 있는 數 많은 監房은 크기가 四조 半이나 될까 말까한 房 하나에 罪囚 15, 6名을 넣는 것이 普通이다. 낮에도 日光은 全然 볼 수 없고 너무도 킁킁해 晝夜로 새눈깔 만한 電燈을 높은 天井에 켜 놓고 監視한다. 변소는 바로 監房 마루 밑에 만들어 있어 惡臭가 24時間 코를 찌른다.

監房 바람벽은 두꺼운 木板으로 되어 있고 木板 틈바구니에는 빈대들이 마치 禁獵區에 사는 들짐승처럼 마음대로 播殖하고 있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攻擊해 온다. 밤에는 다 떨어진 담요 몇 장을 주어 마루 위에 깔게 하나 그 담요는 無數한 이와 벼룩이 득시글득시글하고 있다.

세숫물은 한 방울도 주지 않고 먹을 물도 하루 세 때 所謂 食事 때에 만 連命할 程度로 얻어 먹는다. 먹이는 밥은 보리밥에 소금 넣고 삶은 멸치 몇 마리, 그 分量은 세 때에 주는 밥을 다 소화도 普通사람이 한 끼에 먹는 分量도 못된다.

이러한 監房에서 낮에는 같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못하게 하고 온종일 무릎 꿇고 부처님처럼 靜座해 있어야 하며 밤에는 꿈쩍 못하고 드러누워 있어야 한다….⁸⁸⁾

종로경찰서의 심문 과정에서 일제는 동우회는 단순한 수양단체가 아

86) 張利郁, 「安島山 秘錄」, 『思想界』 1965.3.

87) 김선향, 같은 글.

88) 김여제는 당시 普成專門學校 교수로 재직 중 체포되어 鍾路警察署 留置場에 들어왔다. 김여제는 韓昇寅, 許然과 같이 1호실에 투옥되었다(金與濟, 「獄中에서 島山先生을 모시고」, 『기러기』 1966.5).

님을 증명하고자 열을 내었다.⁸⁹⁾ 동우회는 홍사단이면서 ‘동우회’라는 명칭으로 당국을 속이는 ‘위장’ 수단을 취했다고 진단하였다.⁹⁰⁾ 그리고 또 다른 증거로 월례회·대회·입단식·서약식 등의 회합을 할 때면 한국국기 및 홍사단 기를 게양하고 한국 국가와 團歌로 불리는 독립운동을 고무하는 글귀가 있는 노래를 합창하며, 또한 혁명의식양양을 고무하는 강연을 했음을 들었다. 홍사단약법에 ‘우리 민족전도대업의 기초를 준비한다’라고 한 것은 모두 한국 독립의 기초를 준비한다는 의미라고 판정하였다. 홍사단 입단 문답을 가지고도 문제 삼았는데, 일제는 홍사단이 “문답 중 교묘한 辯舌로써 홍사단은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초를 준비하는 단체이다. 기초준비가 없이 혁명은 절대 불가능하며 준비는 개인의 실력, 단체의 실력, 물질적 실력 등을 포함하게 된다는 것을 교양하며 이 혁명이론을 승낙하는 자를 우선 예비단원으로서 입단”시키고 동우회 회원들도 역시 비밀리에 홍사단의 입단문답과 같은 정도의 문답을 치르고 있으며 한국 독립의 준비단체라는 것을 숙지케 한 후에 입단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동우회사건’ 피의자 심문 때에도 야만적인 고문이 자행되었는데, 김윤경은 당시 정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⁹¹⁾

⁸⁹⁾ 일제는 동우회는 창립된 당시부터 이번 사건 검거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 단순한 수양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온전한 興士團이라며 “교묘한 전술에 의해 조선사회에 있어서의 中堅 인물인 박사, 학사, 전문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 대實業家, 변호사, 목사, 신문관계자… 획득하고 조선독립의 기초준비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그 진상은 쉽게 판명되지 않는다. 그들은 늘 합법수단을 통하여 內鮮融和를 반대하고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함으로써 단순한 민족주의 경향뿐인 단체가 아니다”라고 인식하였다(「興士團(동우회)사건 검거에 관한 건」, 京鍾警高秘 제7735호, 1937.10.28).

⁹⁰⁾ 종로경찰서가 밝힌 양자가 동일 단체라는 증거는 홍사단에서 정해진 일반단원, 예비단원, 특별단원 등 자격은 동우회의 일반회원, 예비회원, 특별회원 등의 자격에 각각 해당되며, 홍사단원이 조선에 귀국하면 아무런 수속도 필요 없이 그 자격에 맞게 동우회원이 되고 동우회원이 상해 및 미국에 건너가면 마찬가지로 자격에 응하여 홍사단원으로 되는 제도가 있으며 두 단체는 재정에 이르기까지 상호 원조하는 등 완전히 동일체이고 主義, 목적 또한 완전히 통일되어 있다고 파악하였다(위의 자료).

⁹¹⁾ 金允經, 「同友會 受難記」, 도산안창호선생집편찬위원회 편, 『島山安昌浩全集』 9권

먼저 묻는 것은 동우회의 목적이 무엇이나 함이었다. 물론 누구나 인격수양이 목적이라고 사실대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놈들은 豫定計劃대로 추궁에 추궁을 더하여 최종의 목적이 '朝鮮獨立이라'는 대답이 나오기까지 별별 야만적 고문을 쓰는 것이다. 고문의 종류는 허다하나 중요한 것은 물 먹이기와 소위 '비행기태우기'(鶴춤추기) 발길로 차기, 몇 시간이든지 꿰어앉히기, 무거운 물건(床 椅子 따위)을 들리어 半쯤 꿰어 엉겨주춤하고 서 있게 하기, 수없이 뺨치기(피가 맺히도록) 동아 바로 얹어 매기, 銃이나 竹刀로 뼈가 어긋나도록 쥐어지르기 목을 숨 막힐 정도로 움으려 매기, 못매질하기...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가지각색의 방법이 있다...

김윤정은 검거되던 다음날인 6월 8일, 종로경찰서 경기도 순사인 窪田政雄 部長으로부터 '자백'을 강요당하며 다음과 같이 고문 받았다.

고문실로 끌고 가 上體를 벗기고 긴 결상 위에 하늘을 向하고 반듯이 누우라 하더니 捕繩으로 다리를 床에 움아매고 두 손을 床 밑으로 제치어 매어놓고 金義洙라는 部長놈이 배위에 걸타고 앉아서 手巾인지 걸레로 입을 덮어 두 끝을 두 손으로 쥐어 搖動 못하도록 누르더니 窪田政雄 [구보다] 놈은 바케스에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코 위로 나비물로 줄줄 쏟아 붓는다. 잇대어 붓고 있으니 그동안 숨을 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물이 숨 쉬는 바람에 한없이 肺로 들어가게 되어 生理적으로 숨통을 막고 胃로 삼키게 된다. 그리하여 숨은 막히어 窒息하게 되고 배는 점점 부르게 된다. 그 苦痛이란 體驗하여 보지 못한 이의 想像하지 못할 노릇이다. 苦痛이 지나치어 氣絶하게 된다. 意識을 잃게 된다. 이때에는 물 붓기를 中止하고 意識이 깨어남을 기다리어 目的을 바로 대라는 것이다. 이때의 心境은 自抛自棄가 되어 '억울하게 十年 징역은 當할지언정 이 苦痛은 못 견디겠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게 된 것이다.

고문의 수법을 보면, "목을 졸라매어 목이 부어 음식을 삼키기 어렵게 되어 일주일 동안 먹지 못하게 되었던 일도 있고 뺨을 쳐서 귀가 멍멍해져 듣지 못하게 된 일도 있었다. 결상을 두 손으로 떠받치어 들고 반쯤

무릎을 꿇게 엉겨주춤하고 두 세 시간 서있게 하였다. 그리고 그놈들은 고통은 주되 할 수 있는 대로 표적이 남지 않을 고문을 쓴다. 이는 후일 악형의 증거가 없게 하려는 奸巧한 手段이다. 만일 折骨이나 傷處가 나게 되면 죄될 행위가 없더라도 약을 발라주면서라도 낫도록 留置시키어 두고 내어놓지 않는다.”⁹²⁾고 김윤경은 회고하였다. 이렇게 고문하여 받아 낸 자백으로 ‘調書’가 꾸며졌으며 지장 찍기가 강요되었다.

도산 역시 鍾路警察署로 송치되어 거의 매일 刑事들의 심문을 받았다. 김여제가 종로경찰서에서 심문받을 때, 도산은 刑事에게 “저 사람은 뭇하러 붙들어 왔지? 저 사람은 흥사단에 다니지 아니한 지 벌써 오래 되었는데…”라고 해주어서 기소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한다.⁹³⁾ 한편 동우회 회원들에게 자행된 가혹한 고문으로 인해 최윤세·이기윤은 옥중에서 사망하였고, 金性業은 불구가 되었다. 도산이 고문당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고문설이 제기되기도 한다.

2) 서대문형무소 투옥과 서거

도산과 동우회 회원들은 6월 17일에 피체된 이래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135일간 취조를 받고 경기도경찰부로 이송되었다. 경기도경찰부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후 1937년 11월 1일 오후 5시 반경, 수갑이 채워진 채 몇 대의 버스에 分乘되어 서대문형무소로 모두 넘겨졌다. 이 날 함께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된 장리옥은 서대문형무소 입감 절차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이로부터 너희들은 이 안에서 썩어져라’는 악언과 함께 各房에 나누어 收監하기 前에 이른 바 調室이란 넓은 방 시멘트 바닥에 가지런히 꿇어 앉힌 후 한 사람씩 불러 내어 衣服을 全部 벗기고 준비하였던 消毒水を

⁹²⁾ 金允經, 위의 글.

⁹³⁾ 金與濟, 「獄中에서 島山先生을 모시고」, 『기려기』 1966.5.

有勢한 펌프로부터 내어쫓는 것이었다. 지난 三伏의 더위를 回顧하면 이 亦 시원한 일일런지도 모르나 實際 우리 一同은 거의 다 暑濕의 差入을 받아 입었던 때요 또 이른 겨울 첫 추위였으니만큼 이 消毒水의 펌프 突射를 嚴然히 또는 유리 體面을 잃지 않고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다. 或은 몸서리치고 或은 물살을 避하느라 하고 或은 거의 죽는 모양에 가까운 몸가짐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장리욱이 목격한 도산의 입감 당시 모습이다.

島山の 차례도 왔다. 옷을 벗고 나선 그의 모습은 文字 그대로 皮骨相接이었다. 굵어진 젓가락 같은 그 다리, 갈비대가 아른거리는 그 胸部, 半쯤 빈 자루같이 된 그 배집, 모든 比例를 잃은 듯이 길어 보이는 그 두 팔은 거의 저승의 市民을 보는 듯도 하였다. 그는 양상한 얼굴에 검은테 眼鏡을 쓰고(이것만은 許諾되었음)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러 同志들을 한번 둘러보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도 零星하게 된 그 몸 全部를 용하게도 統御하고 서서 勢차게 發射되는 차디찬 消毒水의 洗禮을 받았다. 그는 生死苦樂의 境地를 벗어나서 오직 民族의 罪와 同志들의 허물을 달게 받는 祭壇 위의 희생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嚴然한 態度와 그 거룩한 몸가짐은 朝鮮의 참된 革命家 愛國者를 象徵하는 것이었다.⁹⁴⁾

서대문형무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교화선전 책자를 투입해주고 간수들 앞에서 읽도록 강요하는 등 황민화의 교화선전활동에 열을 올렸다.⁹⁵⁾ 미결수로 투옥된 도산과 동우회 회원들은 치안유지법위반의 정치범으로 분류되었고 일체 면회가 두절된 가운데 서대문형무소 독방에 각각 투옥되었다. 당시 제5동 16호실 독방에 구금되었던 장리욱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처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⁹⁴⁾ 張利郁, 「참된 革命家 安島山」, 『民聲』 1949.10.

⁹⁵⁾ “그 자들은 우리 정치범에게는 특수한 대우라고 지껄이면서 가끔 (인도)라는 월간 잡지를 투입해주는 것이어서 읽기는 간수 앞에서 읽는 시늉을 내어야 하였던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은 형무소에서 당시 총독부 시학관의 아들인 현영섭이라는 자가 쓴 (조선 사람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었다”(위와 같음).

식사란 말뿐이요, 그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잡곡밥에 소금뿌린 주먹밥. 그것도 식사라고 삼키고 나면 온종일 배고픈 창자를 부둥켜안고 역경에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당시 일제는 한국의 죄수들을 잘 대우해 준다고 어찌다 외국인들이 감방 시찰을 오면 모범 감방이라고 허위 선전을 하는 데는 정말 우스워 죽을 지경이었다.⁹⁶⁾

길게 줄을 지어선 우리들은 저마다 저녁 食事(양철반자위에 콩밥 한 덩이와 소금 한 줌)을 손에 들고 ‘앞으로 갓’하는 간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30여 개의 감방이 연달아 있고 또 으스스하게 조명된 긴 복도를 한 사람씩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맞은 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간수가 이미 지정된 감방문을 열어 제친다. 동지 한 사람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고 이어 ‘철컹’하는 소리와 아울러 그 문은 굳게 닫아 진다. 저마다 제 차례를 기다리고 섰는 우리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음울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다. 도산의 차례가 왔다. 콩밥 한 덩이를 정중하게 들고 그 양상한 몸을 움직여 걸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이 멀리 복도 저 끝에서 사라져 버릴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내 차례를 기다렸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도산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바로 이 때다.⁹⁷⁾

서대문형무소에서의 55일간의 도산의 투옥 생활은 민족의 구원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함과 민족의 제단 앞에 온전히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친 거룩한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도산의 건강이 악화되어 옥사할 우려가 있자, 서대문형무소 측에서는 1937년 12월 24일자 ‘병 보석’으로 도산을 급히 保釋出所시켰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岩井内科에 입원시켜 전문치료를 받게 하였다.⁹⁸⁾ 그러나 위장병 및 폐결핵증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친형 안치호에게 급히 알렸다.⁹⁹⁾ 일제의 감시로 인해 도산의 병실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1938년 2월 23일까지의 입원비용 약 900엔이 지급되자 일제는

96) 장리욱, 「나의 옥중 투쟁」, 『國民報』 1959.2.25.

97) 張利郁, 「島山이 永眠한 그 후」, 『기러기』 1970.3.

98) 「정치 要視察人 사망에 관한 건」, 京鍾警高秘 제1070호, 1938.3.12.

99) 「要視察人에 관한 보고(안창호)」, 京高特秘 제171회, 1938.1.28.

도산의 병원 비용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¹⁰⁰⁾ 동우회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병실에는 김순원과 이정희(이갑의 딸)만이 간호를 맡으며 병실을 지켰다. 3월 9일 오후 3시쯤 주치의 金容弼는 최후를 위하여 마음 준비를 하도록 청하였다. 전날 혼수상태에 빠졌던 도산의 정신이 간신히 돌아오자, 의사는 도산에게 최후를 준비할 것을 말해주었다. 도산은 덤덤히 유언처럼 말하였다.

알았소. 나는 不敏한 사람이야. 所謂 몸을 革命運動에 바쳤다고 하면서 臨席終身이 당한가. 더구나 同志들을 獄中에 둔 채 나만 이렇게 뜨뜻한 病室에서 정성스런 治療와 看護를 받았으니 죽기도 罪스럽소....個人으로 보면 福에 겨운 一生이오. 나이로 말하면 六十을 壽했으니 不足할 것이 없고 病이 낫는대야 갈 곳이 監獄 뿐이요, 敵의 發惡이 漸漸 더甚할 모양이니 이 때에 죽는 것이 몸으로서는 便하오마는....내가 大寶山을 사랑해. 묻힐 자리를 擇하는 건 慾心이나 形便이 許諾하거든 大寶山으로 가져가고 그럴 수 없거든 忘憂里가 좋아. 忘憂里로 가게 되면 劉相奎(유상규)君 곁에 묻도록 하오.¹⁰¹⁾

3월 9일 오후 7시 경에 이선행이 병실을 방문했을 때, 도산은 이미 의식을 잃고 방문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선행이 사가지고 간 두 송이 장미를 머리맡에 꽂아 놓았을 때, 도산은 무의식 상태에서 “너무 안 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일생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항상 주변에 사람들로 들끓었는데 일본인들의 감시로 인해 문병 오는 사람이 적어지자¹⁰²⁾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다. 밤 11시쯤, 이미 의식을 잃고 맥박과 호흡이 난조를 보이자 산소 흡입기로 산소를 주입하였다. 병실에는 安致浩, 생질 金順元과 金麗順 부녀와 李善行, 張晦根, 李應俊의 부인 이정희 등이 숨소리를 죽여가며 임종을 지키고자 병실에 있었고 宋鎮禹와 白寬洙,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 蔡廷根도 병실을 지켰다. 도산은 1938년 3월 10일 0시 5분

100) 「안창호의 동정에 관한 건」, 京高特秘 제452호, 1938.3.4.

101) 吳基永, 「島山先生의 最後」, 『東光』 1947.5.

102) 李善行·張成心·安聖潔, 「女性이 본 島山先生」, 『기러기』 1968.3.

에 서거하였다.

도산이 서거하자 경찰 당국은 재빨리 장례식 집행에 대한 주의와 제한 방침을 마련해 이를 가족에게 통고하였다. 서거 당일인 3월 10일 오전 9시 50분, 주의 및 제한 내용을 가족에게 통고하였다. “추도회를 열지 말 것과 장례식 주관 및 참석자는 근친자 및 기타 사람 등 부득이 몇 명에 한하고 고별식 집행에도 이들 인원 이외는 현장에 들어올 수 없게 한다고 통보하고 유족 측이 자발적으로 當局의 지시에 순응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¹⁰³⁾

도산의 유해는 병실에서 영안실로 옮겨졌으며 묘소는 양주군 구리면 망우리 공동묘지로 정해졌다. 10일 낮에 彫刻家 이국전이 경찰의 눈을 피해 도산의 데스마스크를 뗐으나 형사가 영안실에서 石膏가루를 발견해 비밀 작업한 것이 발각되어 데스마스크는 동대문경찰서에 압수되었다.

장례식에는 일반인의 조문이 금지되었으며 친족이 상복을 입는 것까지 금지되었다. 영안실에는 동대문서 고등계, 경기도 경찰부, 헌병대에서 正私服의 경찰관 40여 명과 고등계 형사들을 배치하여 조문하는 이들의 언동을 查察하였고 조문하러 오는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하였다.¹⁰⁴⁾ 3일장 마지막 날인 3월 12일, 고별식은 오후 1시 30분부터 병원 영안실에서 열렸다.¹⁰⁵⁾ 친족으로는 안치호, 안신호, 김성탁(안신호의 夫), 김순철, 김순원, 안동철, 안봉호가 참석하였고 비근친자로서는 유일하게 조만식의 참석만이 허용되었다. 張弘範 목사의 주도로 찬미가 제248장이 합창되었고 조만식장로의 기도사가 있었다. 이어 장흥범 목사가 고린도 전서 제 15장, 50장을 낭독하고 찬송가 제35장을 합창 한 후 1시 45분에

103) 「안창호의 사망에 관한 건」, 『京高特秘』 제512호, 1938.3.10.

104) 윤치호는 양주삼의 말을 인용하여 그의 일기에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영안실 주변에 4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어서 가까운 친인척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름을 적지 않고는 영안실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조문하러 가지 못한다고 한다”라고 기록하였다(김상태 편역, 제5부 윤치호가 본 일제하 조선의 자화상(1916~43) 1938년 3월 11일 금요일, 『윤치호 일기』, 역사비평사, 2001, 614쪽).

105) 위와 같음.

고별식은 끝났다. 오후 2시 5분 발인하여 도산의 棺이 자동차로 옮겨져 묘소인 망우리 묘지로 향하였다. 일반 출입로와 부근 도로 등지에는 경찰들이 만일에 있을 ‘불온언동자’를 색출하고 ‘소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査察 警戒를 강화하였다.

영구차 앞뒤로는 경찰 자동차가 경계를 뚫으며 경관들은 가로수 수효만큼 나열하여 忘憂里로 향하는 길가 요소 요소에 배치되어 경계를 뚫었다. 동대문서 私服 경찰관 2명이 영구차 뒤를 따랐으며 공동묘지에서는 관할 楊州 경찰서원 4명이 나와 경계하였다.¹⁰⁶⁾ 당시 영구차가 묘지로 갈 때 망우리 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은 허용되었으나 시내에서 망우리 방향으로 가는 통행은 일절 금지되었다.

오후 3시 30분에 영구차는 망우리에 도착하였다. 현장에서 간단한 기독교식 下棺式을 거행한 후, 관은 즉시 매장되었다. 묘지에 심으려고 가지고 갔던 무궁화 묘목을 압수당한 채, 4시경 장례의식은 서둘러 끝났다.¹⁰⁷⁾ 장례식이 끝나자 일제는 도산의 조카 김순철을 비롯해 친족들도 바로 귀가조치시켰다. 안치호는 삼각정 중앙호텔에 2, 3일간 잔류하며 잔무를 처리하면 바로 귀향하도록 감시하였다. 조만식도 중앙호텔에 1, 2일간 체류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경성에 있는 동안에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두 사람의 동정을 유의 감시하며¹⁰⁸⁾ 일체의 추도회 등이 열리지 못하도록 경계하였다.

한편 도산 서거에 대한 각 방면의 감상을 은밀히 內査하며 도산의 죽음을 둘러싼 민족적 감상에 쐈기를 박고자 하였다. 서거에 관한 弔電弔詞 등에도 이른바 ‘불온’한 내용이 없도록 관련 각 경찰서에서 단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일제는 도산이 서거한 시점에서도 도산에 대해 “지금도 동지 사이에서의 潛勢力이 위대하다.”¹⁰⁹⁾고 평가하면서 언제 不祥事態가

106) 위와 같음.

107) 吳基永, 「島山先生の 最後」, 『東光』 1947.5.

108) 「안창호의 사망에 관한 건」, 『京高特秘』 제512호, 1938.3.10.

109) 위와 같음.

일어날 지도 모른다며 査察警戒를 철저히 하였다.

3) 동우회원의 전향

도산이 서거한 후에도 ‘동우회사건’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다. 1938년 8월 15일에 마침내 예심이 끝나고 동우회원들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1939년 12월 8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판사 釜屋英介는 피고 전원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일제 검찰은 이를 상고하여 1940년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 2심 재판에서 18인에게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하였다.¹¹⁰⁾ 그러나 다시 이듬해인 1941년 11월 17일에 경성고등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동우회사건’ 검거에 착수한지 4년 5개월 만이었다. 일제 당국의 정략적 판단과 조치에 의해 사건의 처리는 일심에서는 전원 무죄 선고, 검사의 항고에 따른 복심에서는 일부 피고들에 대한 중형 선고, 다시 최종심에서는 전원 무죄 선고라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일제는 도산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이 결집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면서 집요하게 도산의 민족적 실력양성운동은 비과학적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도산에 대한 악선전에 열을 올렸다. 독립의 가능성도 없이 입으로 조선민족구제를 부르짖으며 실제로 관계자 전부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기에 도산을 극도로 원망하는 자도 있고 옛날 도산에 대한 숭배의 관념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동우회사건 피의자들은 迷夢에서 깨어나고 있다고 선전하였다.¹¹¹⁾ 그리고 도산이 서거한 후 중심부를 상실한 동우회 회원들에게 사면의 대가로 완전 전향할 것을 강요하였다. 개량주의 온건단체로 분류해 그다지 경계를 펴지 않았

110) 이광수(5년), 김윤경·김종덕·박현환·주요한(4년), 김동원·김성업·김병연·조명식(3년), 조병옥(2년 6개월), 오봉빈·백영업·송창근·김봉성·김찬중·조종완·이영·최능진(2년).

111) 「안창호의 사망에 관한 건」, 같은 글.

던 동우회와 흥업구락부¹¹²⁾까지도 해체시키려면 그들 스스로 민족운동 단체로서의 면모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황민화의 굴레를 씌우고자 획책하였다. 동우회사건과 흥업구락부사건으로 검거된 단원들은 모진 고문과 위협, 그리고 일제의 회유에 굴복해 일부 단원들이 전향을 선언하였다. 먼저 동우회 단원들은 1938년 6월 18일자로 전향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흥업구락부는 그해 9월 3일자로 전향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의 전향성명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한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자발적인 성명이 아니라 총독부가 작성한 원안에 그대로 서명을 강요받았음을 말해준다.¹¹³⁾ 성명서 발표로 민족주의 결사단체의 마지막 보루였던 동우회와

112) 흥업구락부는 YMCA 총무인 신흥우가 1921년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1회 태평양교 육대회에 한국대표로 파견되었을 때 이승만을 만나 동지회의 자매단체를 구상했다가 1925년에 가서야 이상재, 장두현, 이갑성, 유억겸, 오화영, 구자옥, 신흥우가 모여 조직한 결사이다. 1938년 2월 서대문경찰서에서 연희전문학교 좌익교수들의 경제연구회 결사사건을 취조하던 중 유억겸 방에서 동지회와 밀접한 연락이 있음을 증빙하는 문서를 압수하였다. 이를 근거로 윤치영, 구자옥을 취조하고 1938년 5월 20일부터 흥업구락부 관계자 54명을 검거하는 '흥업구락부사건'을 일으켰다(金相泰, 「1920-1930년대 同友會・興業俱樂部 研究」, 『한국사론』 28, 1992 참조).

113) 1) 동우회 명의 전향 성명서와 2) 흥업구락부 명의의 전향성명서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이로 보면 전향서는 일제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 …생각건대 現下 内外政勢의 急激한 變轉과 우리 日本의 劃期的 躍進 發展의 諸契機는 우리를 朝鮮民衆으로 하여금 將來의 發展에 對하여 전혀 新見解와 自覺下에 新運命을 開拓케 하기를 要求하여 마지아니하는 바가 있다. 吾人은 從來 所謂 民族主義의 觀念에 拘泥되어 朝鮮民衆의 發展과 向上은 但只 民族自決에 있을 뿐 이라고 고신하여 過去 우리들의 思想的 및 實踐的 諸努力은 전혀 이 信條下에 奉하여 왔다. …그러나 最近數年內의 朝鮮統治上에 現한 飛躍의 諸現狀과 特別히 最近 南總督에 의하여 강조되는바 內鮮一體의 성은 忽然히 우리들의 迷妄을 覺醒케 하는 바가 있다. 특히 이번 時局에 즈음하여 全 內地人의 半島民衆에 期하는 바 同胞의 信賴와 新日本의 國家的 大理想下에 溫養되어가는 革新氣運은 今日까지 우리가 包懷한 一體의 疑懼와 不安을 一掃하고도 남음이 있다… 今次의 支那事變은 이미 主旨在 하는 바와 같이 日本의 對 國家的 使命의 遂行, 즉 亞細亞 諸民族을 白人 制壓의 桎梏에서 解放하려는 目的의 聖戰이니 吾等은 今後 如何한 犠牲도 不念하고 堅인지구 舉國一體가 되어 目的의 貫徹를 期하여야 될 것이다…(『基督新聞』 1938.8.16).
2. …現下 内外政勢의 急激한 變轉과 我 日本의 劃期的 躍進發展과는 我等 朝鮮民衆으로 하여금 新 覺悟下에 將來의 發展을 約束하지 않으면 안될 處地에 任하였 다… 我等은 從來 民族自決主義의 觀念에 拘泥되어 다만 民族自決만을 夢想하여 오던 터이니 이는 전혀 內鮮兩族의 文化史的 新使命을 認識치 못한 바이다. 특히 最近 數年內 朝鮮統治上에 나타난 飛躍의 現狀, 그 중에도 南次郎 總督의 內鮮一體政

홍업구락부는 완전히 일제에 굴복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들은 민족주의를 포기하고 황국화로 나가겠다고 전향을 성명하였으며 일제는 이를 기회로 동우회와 홍업구락부와 같은 민족주의단체는 거의 박멸되었다고 보고하였다.¹¹⁴⁾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홍사단 원동임시위원부 단원들이 상해를 떠나 임시정부와 함께 重慶으로 이동했을 때, 상해 주둔 일본군과 일본 영사관경찰은 重慶과 미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홍사단 단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상해 잔류 단원들을 위협해 전향을 강압하였다. 이 결과 홍사단원 53명의 명의로 1940년 7월 16일자로 해소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국내 동우회 전향 소식을 듣고 원동지부는 자발적으로 해산할 것을 결정하며 과거의 잘못된 사상을 일소하고 대일본제국의 황국신민이 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일제는 재류조선인 ‘保護撫育事業’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원동위원회의 소속 재산(南京의 토지와 은행예금)을 무조건 차압하다고 고시하였다.¹¹⁵⁾ 본인들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되어 발표된 해소성명에 접한 重慶의 단원들은 당장 반박 성명을 내고 이를 부인하였다.¹¹⁶⁾ 그러나 해체성명서는 인쇄되어 중경과 미주, 조선 각 방면으로 전파되었고 한글신문에까지 발표되어 홍사단원들에게, 그리고 민족운동계에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공작은 이미 총독부에 의해 자행된 국내 동우회, 홍업구락부사건에서 보여준 행태와 같은 수법이며 전향운동의 효과를 노리는 일제의 전략이었다.

策은 半島 民族에 주는 同胞의 信賴와 新日本의 國家的 大理想과를 強調한 一體의 疑懼와 不安과를 一掃하여 버렸다... 現在의 支那事變은 日本의 大國家的 使命, 卽 新東亞 建設의 目的을 達成케 하는 聖戰이므로 我等은 如何한 犧牲도 不辭하고 光輝있는 皇國日本의 臣民으로서의 榮譽과 責任을 痛感하고 八宏一宇의 道義的 結合으로서 自분 努力케 함을 誠心으로 誓하는 바이다... (『東亞日報』, 1938.9.4).

114) 「昭和十三年度における鮮内思想運動の概況」,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思想彙報』 18, 1939.3, 10쪽.

115) 「興土團遼東支部の解散」,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 『高等外事月報』 13호, 1940.8, 24~25쪽.

116) 獨立紀念館 所藏, 「원동위원부 선언서」, 1940.10.

1938년 11월 3일 보석되어 출소한 이광수와 주요한을 추동하여 일제는 사상전향회를 열게 하였다.¹¹⁷⁾ 이 자리에는 경기도 警部補로 수사과정에 서 고문을 일삼던 사이가 시치로(齊賀七郎)가 임석해 皇居遙拜, 중일전쟁 중에 전몰한 병사들을 慰靈하게 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묵도를 올렸으며 전향표명서 등을 참석 회원에게 배포하여 자신들은 과거를 청산함과 동시에 금후 천황의 충량한 日本臣民으로서 살고자 결의한다는 일방적 발표를 하게 하였다.¹¹⁸⁾ 이어 남산 조선신궁을 참배하게 하고 회원들이 합의한 바 없는 ‘합의사항’¹¹⁹⁾을 가지고 출석자 28명 전원의 날인을 받았다. 한편 변호사를 통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투옥된 이들에게 동의날인을 받아 두었고 지방에 거주한 缺席者에게도 통신연락을 취해 날인을 받아 이를 재판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전향’의 증거로 국방헌금을 내도록 강압하였다. 이 같은 충성 맹세의 대가로 동우회 회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제에 협력을 강요받으며 살아야 했던 동우회 회원들에게 일제의 패망과 광복은 여러 가지 회한을 불러일으켰다. 해방 후 동우회 회원들은 망우리의 도산 묘소를 찾아가 도산을 추도하였다. 그날 “어떤 이는 묘소

117) 출석자는 이광수, 김종덕, 박현환, 김윤경, 주요한, 조병옥, 오봉빈, 이윤재, 유기준, 김동원, 조종완, 김찬중, 최능진, 석봉련, 최윤희, 조명식, 김병연, 김성업, 허용성, 송창근, 백영엽, 주현직, 장리욱, 오익은, 김용장, 김선량 등이었다(「동우회사건 보석출소자의 사상전향회의 개최에 관한 건」, 『京高特秘』 제2494호, 1938.11.5).

118) 위의 자료.

119) 합의사항의 내용은 과거 동우회 회원들은 일본 제국의 조선통치를 식민통치로 해석하고 조선 민족은 영원히 노예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일시동인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고 보고 독립사상을 갖고 일본제국의 고삐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무라고 믿어 왔는데,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제국의 국가적 이상은 구미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의 질곡에서 벗어나 八宏一宇의 사상으로 共存共榮의 신세계를 건설하는 것이고 조선민족은 제국의 신민으로서 영예와 명예를 함께 함을 이해하고 종래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과 감정을 청산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1. 지성으로써 천황에게 忠義를 하자. 1. 일본국민의 신념과 긍지로서 제국의 이상실현을 위하여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전력을 다하자. 1. 중일전쟁은 일본제국의 국가적 이상실현의 기초에 관한 것임을 파악하며, 작전 및 장기건설을 위한 모든 국책의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자는 내용이었다(「동우회사건 보석출소자의 사상전향회의 개최에 관한 건」, 『京高特秘』 제2494호, 1938.11.5).

앞에 엎드려 흐느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통곡했다”고 회고한 장리욱은 “그렇게도 사랑하던 선생(예수-필자)을 두 번 세 번 부인하고 있던 베드로는 새벽닭이 우는 무렵 통곡했다. 이것은 참회의 통곡이었다. …그(도산-필자)를 위한 추도회에 앞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씻어 버리기 위한 참회의 모임을 먼저 가졌어야 했을 것이다.”¹²⁰⁾라고 고백하였다.

6. 맺음말

본 논문은 상해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된 이래 서거하기까지의 도산 안창호의 행적과 함께 구치소 및 형무소에서의 투옥 생활에 대해 집중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 경무국 소관의 일제 경찰서 유치장과 법원의 구치감, 그리고 서대문형무소·대전형무소 등지에 수감되었을 당시의 刑行 실태를 아울러 살펴볼 수 있었다.

일제는 도산을 국내로 압송해 감시와 억압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민족적 영향력을 소멸시켜버리고자 온갖 분열책과 전향 공작을 전개하였다. 민족 통합과 결집의 상징으로서의 도산의 면모는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으며 황민화의 시대에도 도산을 중심으로 민족주의는 오히려 결집되었다.

도산은 경찰서와 법원 구치감, 그리고 형무소에서 투옥생활을 하던 중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일체 불편을 호소하지 않고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투옥생활 동안 그의 건강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갔다. 대전형무소에서 출옥한 후 평양 대보산 송태산장에서 잠깐의 은둔 생활을 하며 안정을 찾기도 했지만 일제는 황민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 존재만으로도 빛을 발하고 민족의 힘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되고 있는 도산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 중국

¹²⁰⁾ 張利郁, 「島山이 永眠한 그 후」, 『기러기』 1970.3.

침략을 준비하며 황민화에 박차를 가하고 일체의 민족운동을 박멸하고자 했던 일제는 또다시 도산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서대문형무소에 투옥하였다. 도산은 더 이상 옥중 수난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일제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도산을 국내로 압송해 형무소 울타리 안에 가두고 온갖 분열책과 전향 공작을 전개하고 민족적 영향력을 소멸시키고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자 했지만 도산의 존재는 여전히 민족 통합과 결집의 상징으로 빛을 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도산이 투옥되었을 당시 감옥생활 기록에서 일제 식민지 刑行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일제 공권력의 서슬이 가장 시퍼렇게 살아있던 형무소 내에서도 한국민의 민족주의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울러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의 애환과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접수일 : 2013. 11. 21 / 심사완료일 : 2013. 11. 26

■ 주제어 : 안창호, 서대문형무소, 대전형무소, 흥사단, 동우회, 동우회사건, 치안유지법 위반, 전향운동

❖ 참고문헌

1. 신문류

『東亞日報』·『中央日報』·『朝鮮日報』·『國民報』·『基督新聞』·『每日申報』.

2. 잡지류

『別乾坤』·『三千里』·『東光』·『新東亞』·『기러기』.

3. 자료 및 논저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安昌浩訊問調書」, 『朝鮮思想運動調查資料』
(第1・2輯), 1932・1933.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安課, 『高等警察報』 4, 1934.6.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思想彙報』 12(1937.9)・18(1939.3).

朝鮮總督府 警務局, 『高等外事月報』 13호, 1940.8.

독립기념관 소장, 「島山 安昌浩資料」.

金性業, 「二十五年만에 島山會見記」, 『三千里』 1934.8.

吳基永, 「島山先生の 最後」, 『東光』 1947.5.

張利郁, 「참된 革命家 安島山」, 『民聲』 1949.10.

金正蓮, 「刑務所の 島山先生」, 『새벽』 1957.4.

朴寧峻, 「獄中の 島山」, 『공함』 1961.4.

張利郁, 「安島山 秘錄」, 『思想界』 1965.3.

金興濟, 「獄中에서 島山先生을 모시고」, 『기러기』 1966.5.

李善行·張成心·安聖潔, 「女性이 본 島山先生」, 『기러기』 1968.3.

김선량, 「島山 선생님을 追慕」, 『기러기』 1968.3.

張利郁, 「島山이 永眠한 그 후」, 『기러기』 1970.3.

김구, 『白凡逸志』, 2002, 나남출판사.

國會圖書館編, 『島山安昌浩 資料集』 I・II, 1997.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찬, 『島山安昌浩全集』,
2000.

金學俊, 『佳人金炳魯評傳』, 1988, 민음사.

金相泰, 「1920-1930년대 同友會·興業俱樂部 研究」, 『한국사론』 28, 1992.

주요한, 『안도산전서』(상) 전기편, 범양사, 1993.

김상태 편역, 『윤치호 일기 1916~1943』, 역사비평사, 2001.

❁ 국문요약

도산 안창호의 서대문형무소 투옥과 수감 생활

이 명 화

본 논문은 도산 안창호가 서대문형무소에서 투옥생활을 했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1932년 상해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어 서대문형무소와 대전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했으며 출옥한 후 1937년 또다시 서대문형무소에 재수감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나 서거하기까지의 행적을 추적하였다. 이와 동시에 두 차례 형무소에 수감되어 경험했던 형무소 생활의 실태와 당시 형무소의 行刑 실태를 아울러 살펴보았다.

도산은 일생을 통해 4차례 감옥에 투옥되었다. 첫 번째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거가 일어났을 때, 평양에서 압송되어 영등포 감옥에 투옥되었다. 두 번째는 1927년 만주 길림성 대동문 밖에 위치한 대동공사에서 강연하던 도중 중국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길림 경찰청 구치소에 20여일 동안 수감되었다. 세 번째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거가 일어난 날, 체포되어 국내에서 4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이후 이송되어 대전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네 번째는 1937년 6월, '동우회사건'으로 다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일제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도산을 국내로 압송해 형무소 울타리 안에 가두고 감시와 억압을 가하여 그의 민족적 영향력을 소멸시켜 버리고자 하였다. 온갖 분열책과 전향 공작을 전개하고 감옥에 투옥시켰지만 그의 존재는 민족 통합과 결집의 상징으로 여전히 빛을 발하였다. 도산은 경찰서와 법원 구치감과 형무소에서 투옥생활 중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투옥생활 동안 그의 건강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중국 침략을 준비하며 황민화에 박차를 가하고 일체의 민족운동을 박멸하고자 했던 일제는 또다시 도산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서대문형무소에 투옥하였다. 이제 도산은 더 이상의 옥중 수난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도산의 투옥 생활 기록에서 당시 刑行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형무소는 공권력의 서슬이 가장 시퍼랬던 곳이다. 그러나 형무소 내에서 한국민의 민족주의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의 애환과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영문요약

Dosan Ahn Chang-ho's Imprisonment in Seodaemun Prison and Prison Life

Lee, Myung-Hwa

This article summarized Dosan Ahn Chang-ho's imprisonment at Seodaemun Prison. Ahn Chang-ho's records as a prisoner have been traced that he was arrested in Shanghai in 1932, repatriated to Seoul, Korea, and jailed in Seodaemun Prison and Daejeon Prison, that, after discharged from the prison, he was detained again in Seodaemun Prison in 1937, and that he was released on bail due to severe illness. We also investigated the realities of prison life and execution of sentence in those days that Dosan experienced through two imprisonments.

Dosan had been jailed in prison four times for his life. Dosan was first arrested in Harbin on 26, October, 1909 when Ahn Jung-geun assassinated Itō Hirobumi, and he was repatriated to Pyongyang and jailed in Yeongdeungpo Prison. The second was the time he was arrested by Chinese police and detained in Jilin police detention facility in 1927 during delivering a speech at the Daidong Company located on the out of Daidong gate, Jilin province, Manchuria, being released after 20 days. The third imprisonment was the time he was arrested at the same day when Yun bong-gil's heroic deed was arising, sentenced to four years in imprisonment, and jailed in Seodaemun Prison. He was repatriated to and released from Daejeon Prison. The fourth imprisonment was the time Dosan was arrested again by Japanese

authorities for the ‘Dongwuhoe incident’ in June, 1937 and jailed again in Seodaemun Prison.

By repatriating Dosan leading the movement in China to Korea, oppressing, and monitoring him in the prisons, the Japanese Empire tried to eradicate Dosan’s national impact and outstanding leadership on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In spite of all kinds of splitting strategy and ideological conversion maneuvering on him, Dosan’s presence still shone as a symbol of nation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When confined in police and court detention facilities and jailed in prison, Dosan displayed an exemplary prison life not to worry his family and relatives. Dosan’s health, However, was too worsening to be restored during imprisonment. Preparing for invasion into China and spurring the japanization of Korea, the Japanese Empire which tried to eradicate all kinds of national movement for independence prosecuted Dosan for the violation of the Sedition Acts and jailed him in Seodaemun Prison. Dosan could no longer survive his terrible ordeal in prison and died after all. The realities of execution of sentence in those days were examined through the documents on Dosan’s prison life.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the prison was the place where governmental authority was the most threatening, but Korean people’s nationalism in the prisons was reaffirmed to remain alive. we could appreciate joys and sorrows and hardship of the jailed independence activists.

Key words: Ahn Chang-ho, Seodaemun Prison, Daejeon Prison, Hungsadan (the Young Korean Academy), Dongwuhoe Incident, Violation of the Sedition Act, Ideological Conversion Movement